

제337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11월23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계속)
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계속)
5.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계속)
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동물원법안(계속)
21.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3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계속)
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7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5.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 6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	17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	17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17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20.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	19
21.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19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9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	27
34.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1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77)(계속) .....	31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6)(계속) .....	31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3)(계속) .....	31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9)(계속) .....	31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2)(계속) .....	32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36)(계속) .....	32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32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32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계속) .....	32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46)(계속) .....	32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65.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32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36)(계속) .....	52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52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52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계속) ..... 52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 63  
 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6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 68  
 7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 69  
 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69  
 7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 69  
 7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 69

(10시12분 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인영 위원 예.

지난주에 저희가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다가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법안 심사를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측에서, 특히 조원진 원내수석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는다, 철회한다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다시 법안 심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심사에 저해되는 이런 환경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법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안 심사에 야당 위원들님께서 복귀하신 것을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3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논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석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배출가스 임의설정 등의 행위 금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논의한, 협의한 결과 조정안으로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매출액의 3% 얼마고,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 부분은 100억 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거는 지난번에 계류하고 100억으로, 지난번에 100억으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과징금.

○이완영 위원 다른 거였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거는 이미 계류하고 이번에 남았던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완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의 없으면 이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소위에서 의결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의결하였던 대안에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10시15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최봉홍 의원, 전병헌 의원, 이윤석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의견이 많이 좁혀졌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쟁점사항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 제명을 기본법으로 할지 촉진법으로 할지의 문제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법안의 내용상 촉진법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한 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자순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으로 되어야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촉진법이 자순법에 근거하여 재활용과 폐기물의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쟁점 사항으로 폐기물로 볼 것인지, 순환자원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순환자원 인정 문제도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보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폐금속 등은 이미 순환자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차관, 그 이후에 뭐 논의해서 좀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말씀 맞춘 건 기본법이나 촉진법에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이 법이 지금 정하는 것이 재활용을 촉진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내용이 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목을 바꾸는 데는 정부도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기업이 스스로 인정해서 순환자원으로 하는 것은 워낙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중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되 폐지나 폐고철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안착이 돼 있으니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에 일정 부분의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좀 더 간소하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 정도 하면 일단은, 절차적인 걸 생략해 준다든지 증명된 것 또 굳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략을 하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게, 많이 주신 제목이 자원순환촉진법,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런 제목을 주신 바는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지금 우선 이름을 정의…… 정의? 이름? 명칭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명칭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를, 정의 조항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현재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에서 ‘폐기물 중’을 좀 뺐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거는 9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는 ‘순환자원이란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 의견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은수미 위원님은 찬성하신다고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은수미 위원 아니, 이름이……

○소위원장 권성동 이름을 바꾸고.

○은수미 위원 이름을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순환자원이용법’ 이런 건 안 되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되면 위원님, 너무 축소되는 것이 우리가 매립이나 소각을 지양하고 순환사회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담금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순환자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앞으로 자원 쪽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본래 그래서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관한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기본법으로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기본법도 의미가 있고 촉진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계적으로 가 보자, 큰 목표는 저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전환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순환자원만 딱 한정해 버리면 너무 법이 좁혀져 가지고 순환자원 이용만 돼 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제도가 들어가지를,

한계가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럼 이름을 뭐로 하면, 정확한 이름은……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이름은 ‘촉진’이란 말은……

○은수미 위원 자원순환촉진법?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이거하고 어떤 구조로 지금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같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은……

○우원식 위원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면 되잖아.

○소위원장 권성동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만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보다 범위가 넓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넓어져요.

○소위원장 권성동 특별법이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러니까 폐기물에서 재활용을 시키면 자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우원식 위원 아니 아니, 나도 이거 원래 옛날에 소각정책 반대하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쓰다 남은 자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순환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95년부터 내가 주장해 왔었던 거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인데.

그런데 자원순환 이렇게 하려면 자원을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원순환,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이렇게 기본법으로 못 가는 이유가 산업부에서 자원을 환경부가 이런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전체,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자원을 통째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지금 폐기물관리법하고 구분 지어지는 거는 거기에서 순환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 순환이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촉진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순환자원촉진법이요. 그러면 순환자원촉진법이라고 해야지 자원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면서 마치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개념을 잘못 정해 놓으면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나중에 헷갈리고 그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원식 위원** 지금은 우리 상황에 맞는, 지금 산업부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고, 자원 전체를 지금 산업부가 관장하고 있고 환경부가 관장하는 거는 쓰다 남은 에너지를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순환자원만 한정해 버리면 아까 그런 모순이 있고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소되는 건 맞는데, 지금 법 자체가 환경부가 관장할 수 있는 게 축소된 영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걸 과대포장해서 욕심을 내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하고 다른 거는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지금 인정하고 하는 걸 다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면 폐지나 이런 거를 그냥 내버려 뒀도 되는 일인데 그것도 다시 환경부가 틀어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폐기물관리법하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름만 병병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폐기물 관리에서 확대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한된 게 많습시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전체 자원을 관리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순환자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담금 물리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성과 관리하는 제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업무는 물질에 대한 것도, LCA 평가하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법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쪽 분야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순환으로 한정해 버리면 다른 법을

만들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우원식 위원께서 95년부터 관심을 가졌다가 정말 존경하고요. 의견 중에 순환 자원에 관한 법 이렇게 하면 자원에 관한 법이 되어 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원순환하고 순환자원 자꾸 섞어 쓰지만 의미가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되는 법인데 지금 폐기물관리법, 재촉법 등등 해서 순수하게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자원으로 옮겨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 자원으로 옮겨 가자는 것은 재활용이지요. 물질을 재활용하든 그대로 또 재활용하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병헌 의원하고 같이 기본법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 등등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의미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기존의 폐기물법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법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 이게 어리벉벉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용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순환자원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인정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거는 순환자원이고 결국 안 되는 것은 매립이나, 태우는 것은 쓰레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제로화로 가자, 이 법이 담는 내용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던 노원구가 옛날에 소각장 건설하면서 아주 92년부터 쟁점이 세계 불어 가지고 태우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생활폐기물 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생쓰레기 분리운동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분리운동이 그때 시작을 한 거야. 조리되기 전의 쓰레기를 죽 다 걷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내놓는 운동부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걸 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태우든지 매립하는



쓰레기에서부터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재활용 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폐기물로 보는 거야. 그런데 폐기물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쓰다 남은 자원이라는 거지. 그게 순환자원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자꾸 구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낼 게 아니고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을 쓰다 남은 에너지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자원으로 확실해 구분해 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큰 개념을 써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면서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더 크게 만들고 순환자원에 대한 자율성도 훨씬 떨어뜨리고, 말은 크게 만들어 놓고 내용으로 들어 가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담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자원이 아니라 자원순환으로 해서 자원순환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완영 위원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차관님……

○우원식 위원 자원순환이 아니고 순환자원.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이 ‘자원순환’ 자꾸 하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또 하시어서……

○이완영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님 주장하는 바가 원래 내가 주장하는 바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지라든지 폐금속 이런 것, 기본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해 버리고 가자, 근본적으로 좀 구분하고 기존 폐기물에서 또 환경부가 인정해서 순환자원으로 가는 것은 두 트랙으로 의미를 인정을 해 주자 그 취지예요, 지금 우원식 위원님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우원식 위원님 주장에 동의를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 제명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해 봤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명은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하자,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법률 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기본법으로 가든 촉진법으로 가든 그것 다 나름의 타당성과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 법을 결국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려면 그런 서로의

주장을 절충을 해야 되니까 제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합시다. 하고……

○이완영 위원 내용을 좀 심사하지요, 내용을. 내용을 심사하지요, 제명은 두고.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차관님, 그러면 법률명 이전에, 그게 기본법이다 촉진법이다 이런 법체계는 일단 논란을 유보한다 치더라도 법률 명칭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용에서 자원순환사회 촉진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세 덩어리 정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원래는 자원요, 원래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순환시킬 건가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자원을 써 가지고, 지금은 폐기물로도 얘기되지만 순환자원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영역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이라고 걸었을 때 한 부분이 지금 크게 부족해 있는 상태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이 법안에서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원리라는 말씀이지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놓고 보면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제목을 달면 순환자원, 아니면 폐기물이라고 분류된 것들을 어떻게 순환자원으로 촉진시켜 갈 건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의 굉장히 큰 한 영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이런 쪽에 기여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전체, 전 부처를 아우르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선례도 없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폐기물 관련된 순환자원이 전면 확대되는데 우리 지금 이 법에서도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평가제도,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져 오고요.

또 하나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

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증거 들이대면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나라는 법체계를 그래서 2개로 병립화시켜 놨다고요, 한 법 속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나라도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좀 곤란한 말씀이시고, 법체계를 그래서 두 법을 이렇게 병립해 놓았다고요. 한 법 안에다 때려 넣으려고 하지 않고 2개의 법으로 같이 해 놨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런 형태고.

그래서 그 논란은 지난번에 한 거니까 빼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는 순환자원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속에서 전체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것, 내용적으로는 이러 거다 이런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앞에 한 얘기는 지난번에 하신 얘기인데 다시 하시면 제가 그것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처럼 자꾸 그러잖아요. 저도 일본 것도 보고 독일 것도 보고 그랬지 않겠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 다른 나라 법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마는 저희도 아까 자원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왜 썼냐 하면 순환자원만 해 버리면 자원 딱 그거만 되면 순환자원 정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제안하는 것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많이 쓰라는 성과평가도 들어가고 부담금 제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제품 등에 대해서 자원순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생산하는 단계에서 순환성이 얼마나 적정하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광물 채취에서부터는 안 들어가지만 제품 자체의 순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거든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순환자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는 않고요. 순환자원만……

○**이인영 위원** 아니, 맞지요. 지금 이 법은 그런 법이지요. 이완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세요, 이 법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순환자원만 그렇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순환자원제도는 인정하는

데……

○**소위원장 권성동** 자, 잠깐만요. 이 문제 가지고 차관하고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제명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인영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기본법적인 성격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기본법은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이고 이걸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의 이름을 다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절치 못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촉진법 정도로 해서 제명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촉진법으로……

○**이완영 위원** 순환자원요?

○**은수미 위원** 예.

○**이완영 위원** 자원순환이 들어가야 돼요. 순환자원 하면 그냥 산자부 법이지.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위원님, 이 부분은 5개 발의된 법안 자체가……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순환자원 이용 및 촉진법 하든가……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자원순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좀 가만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이 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중재안을 내니까 순환자원 이용·촉진법이 정도로 해서 결론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의견 있어요.

이게 우선 제명이 기본법, 촉진법은 둘째치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위원장님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에요.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순환자원 이용·촉진법 이렇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환자원 하면 자원 중의 하나의 종류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자원순환사회, 자원순환으로 가야 돼요, 기본법이든 그냥 촉진법이든. 자원순환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으로 가자?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해도.

○소위원장 권성동 기본 빼고?

○이완영 위원 아니, 저는 기본법을 주장합니다 마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절충안으로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의원안도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완영 위원 전병헌 의원 법은 기본법입니다.

○이인영 위원 이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시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대체토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인영 위원 순환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는, 이렇게 둘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김용남 위원 그건 너무 길지요.

○이인영 위원 너무 길어요?

○이완영 위원 제목은 크게 자원순환……

○이인영 위원 김용남 위원이 의회 경험이 제일 적은데 그렇게 한 마디로 잘라버리는 무례함을 또 이렇게……

○김용남 위원 아니, 너무 길고 이게 지금 순환도 들어가고 전환도 들어가면, 사실은 순환·전환이 두 개 다 들어가면 조금 이상해요, 법명이.

○소위원장 권성동 어쨌든 간에 순환자원 촉진법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은 반대하셨고 나머지 분들 반대 없으시지요, 이용 및 촉진법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 다들 각자 의견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으로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분들은?

○은수미 위원 저는 순환자원 이용 촉진법 동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자원순환이 순환자원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그것의 본뜻이,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원순환사회……

○최봉홍 위원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 법요.

자, 그러면 보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 위원 내용은 많이 접근된 거지요? 제목의 문제인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제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당분간 이것은 계속 소위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이완영 위원 다른 것은 심의 안 해요? 제명 다음에 정의하고……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이제 순환자원과 폐기물은 나는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 문제에서 우원식 위원님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이인영 위원 정의는 한번 해 봐요, 그건 정리될 거 같아.

○소위원장 권성동 정의는 안 돼. 정의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도 안 돼요.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정의는 좀 접근된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안 됐어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정의는 접근됐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이 됐어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정의가 당초에는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물건인데 ‘폐기물’ 뒤로 빼가지고요, 순환자원이란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물건에 관한……

○우원식 위원 몇 페이지?

○장하나 위원 어디를 볼까요?

○은수미 위원 13쪽.

○소위원장 권성동 차관이 설명해 보세요, 너무 말이 빨라요. 천천히……

○환경부차관 정연만 13쪽을 보시면 13페이지의 정의의 3호, 본래 당초 개정안에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견에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이거는 좀 처음부터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인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폐기물 중’은 뺏으면 좋겠다 해서 ‘폐기물 중’은 빼고 ‘순환자원이란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아니요, ‘폐기물이 아닌’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권성동** 9조에 따라, 뭐?

○**환경부차관 정연만**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은수미 위원** 저는 동의.

○**우원식 위원** 저는 이게 그동안 쪽 해 오면서 순환자원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폐지, 폐의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쪽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재활용품이야 이런 것들.

○**이인영 위원** 검증된 것.

○**우원식 위원** 검증된 것. 그러니까 폐지, 폐의류 뭐 이렇게 해서 검증된 것들과 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래야 좀 자율성이 생기지.

○**김용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위원님, 그게 폐지와……

○**김용남 위원** 잠깐만요. 폐의류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와 그게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일정 부분은 그냥 당연히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버리고 가면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그거를 그냥 순환자원이라고 우기고 당연히 폐기 처리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어디 쌓아놓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의 규정에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을 빼 버리고 ‘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으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그걸 순환자원으로 보면 되지 그거 중에 또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 중에 또 폐기물 아닌 것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봉홍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하고 똑같

아요. 지금 뭐냐 하면……

○**우원식 위원** 폐기물관리법이라니까, 그게.

○**최봉홍 위원** 우리가 이걸 버리는데 자원입니다. 순환자원인데, 이게 독극물이 들어갔거나 할 때는 이게 폐기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환자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 놓으면 이걸 전부 속이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이 되어서 안 돼요. 바젤협약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인체에 유해한 거는 폐기물로 하라고 하면 되지.

○**최봉홍 위원** 그거를 그렇게,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냉장고를 끄집어 내 가지고 썩어……

○**소위원장 권성동** 자, 장하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저는 김용남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그 지적 다 동의하고요. 다 저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따지면 현재 우리 골목골목마다 있는 의류수거함부터 다 없애야 될 판이 됩니다. 왜냐면 뭐 묻어 있는 것 거기 갖다 넣는 것도 못 해야 돼서.

그러니까 현실도 반영하면서 아까와 같이 문제를 막으려면 저는 일단 순환자원이 뭐가 순환이다 이거는 아까 앞전 말씀대로 지금 현재 통용되는 것 넣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환경부가 폐의류 이런 것 외에 외국에서 가져온 다든지 새로이 생기는 부산물들은 환경부 인정받도록 해서 순환자원 리스트를 계속 리스트업해 가는 방식이 맞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요? 유해물질이 묻거나 이런 거는 순환자원 인정이 아니라 저는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1년이면 1년마다 그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업체가 취급하는 물건을 본다면, 그럼 매번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매번 수거할 때마다, 그러면 의류가 뭐가 묻어 있을 수 있고 안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매번 볼 수는 없으니까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아니라 순환자원 취급 업체에 대한 등록, 인정, 관리·감독 이런 제도를 따로 넣고요.

순환자원은 현재에 주로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리스트에 넣고 거기에 따라 장관님의 인증이 필요한 거는 추가해서 계속 넣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정의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각각 부분하고, 다르고 또 지적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영 위원 저는 '순환자원이란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합의의 폭이.

○소위원장 권성동 괜찮을 거 같은데요, 이걸.

○이인영 위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답답해서 그러는데.

최봉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바꾸면 지금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신 게 뭔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최봉홍 위원 설명을 해 주소.

○이인영 위원 지금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자원이 심사를 안 받고 바로 순환자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뒤에 신고제나 허가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얘기될 수 있으니까 여기 쟁점에서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항목에서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절차를 좀 생략……

○이인영 위원 이 항목은 지금 쟁점으로 남은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 가서 처리하면 될 문제라서 여기서는 쟁점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예,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부안의 제 2조3호 그거보다는 수정의견 3호가 조금 더 넓어진 같은데, 여기 앞에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이라고 인정한 부분들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이 아닌 부분들은 다 이렇게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더 넓은 거고,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서는 쟁점을 해소하고 뒤에 가서 그럼 폐기물이 뭐냐, 그걸 어떤 거는 신고하고 어떤 거는 허가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버리면 이 조항의 쟁점은 해

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닌가요?

○이인영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2조3호로……

이거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할 때 각자 의견을 고집을 하면 이거 법안 1건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고 전체적인 의미가 같다 그런다면, 같거나 유사하면 웬만하면 좀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장하나 위원님이나 최봉홍 위원님이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지만 어차피 3호 정도로 규정을 하면 이게 순환자원의 개념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제시겠지만 조금 양보하는 그런 좀 지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이따가 하지요, 뭐.

○이인영 위원 좀 이따 해요?

○우원식 위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

○이인영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인영 위원 대안 마련을 위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논의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 신고 허가는 안 해?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영 위원 신고하고 허가.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할 필요 없어.

○이인영 위원 거기서 얘기하면 이게……

○소위원장 권성동 똑같이 반복되니까.

○최봉홍 위원 7번, 7항.

○이인영 위원 해소를 해야지 되니까 그러지.

○소위원장 권성동 해소가 안 돼, 지금.

○이인영 위원 신고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하나만 갖고 오늘 다 할 거예요?

○최봉홍 위원 다음 안건 넘어갑시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까지 몰상식하게는 안 할 테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금……

아니, 지금 해소가 됐다 해서 올렸는데 해소도 안 된 걸 자꾸만 올리면 논의를……

○이인영 위원 9조에서요. 9조에서……

○소위원장 권성동 몇 페이지?

○이인영 위원 9조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19페이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18쪽에……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인영 위원 ‘순환자원 인정 시에 폐지·폐급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조정해 본 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거를 완전히, 절차·방법 등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이쪽의 의견이신 거고,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거고, 정부는 이것도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서 지금 절충해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접근시켜 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봐야지. 더 접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고철이나 폐지나 폐의류가 누구나 가져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지에도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이걸 누가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재활용 저희들 확대할 때 굉장히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도 해 줘야 되느냐, 이 범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논의했듯이 이거는 재활용보다 훨씬 더 많이 그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폐지라는, 누구나 폐지라는데 그 폐지에 뭐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하라는 취지지, 정부가 이걸 들고 있어 가지고 어떤 권한을 부린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나갔을 때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해 줘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하고.

또 이게 국제적으로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확대해 가는 거는 맞는데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품, 제도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없다면 전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그건 애초부터 자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뭐가 묻었는지 지금 검증이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제 우리가 순환자원할 때에 사이클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업계에서 어디 쪽 들어오는 증명이 되면 그런 거는……

○우원식 위원 지금 고물상에서 얼마큼 재활용이 되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물상에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재활용, 저희들이 전체 통계는 잡혀 있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거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게. 지금 뭐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맞는 얘기지만.

정 그게 문제가 되면 ‘인체에 유해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또 해 놓으면 되는 거지.

○장하나 위원 차관님, 저도 질문 좀……

○소위원장 권성동 순환자원의 정의하고 연결되는……

자, 그럼 보류하고.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51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연계된 건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연계된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 그래요?

그럼 7항은……

8항부터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완영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순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애를 많이 쓰고 우리여야 위원도 개별적으로 설득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 이인영 간사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에 여야 한두 분하고 정부하고 해서 법 제명이든 그리고 용어 정의든 이런 게 좀 접근을 하면 쉽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님 중재를 해주셔서 가지고 좀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이인영 간사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소위원장 권성동 어떻습니까? 우리 이완영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어차피 개별 위원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삼으면 합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한테 위임을 하든 여야 대표 위원 한 명씩에게 위임을 해서 논의를 하게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인영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지요, 우리가.

○소위원장 권성동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인영 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지요, 뭐.

○최봉홍 위원 제가 그럼 같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여기에서 보다는 따로 점심시간에 같이 좀 논의해 보는……

○최봉홍 위원 전 이걸 환경부가 여야 위원님들 전부 다 접촉을 했기 때문에 처음 의도대로 법이 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름은 바뀌더라도 내용이 원 뜻을 반영을 하면 저도 동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순환자원하고 자원순환하고 이 관계도 있고 그다음 뒤에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관계도 있고 해서……

환경부가 집행, 법안을 집행할 사람은 환경부입니다. 현재 실정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안을 끄집어 내놓고 뭐 정책 협조해서, 뭐니까, 이거 꼭 해야 할 법이다 하는 바람에 밀려 가지고 그 내용이 변질이 된다면 이 법은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몇 시간 또 해야 될 거고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법이 처음 만든 목적대로 못 갈 때에는 차라리 19대에 끝내고 20대 가서 새로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나간다면 이걸 법 처음 만든 그 뜻이 꼭해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하튼 한번 논의를, 그러면 이완영 위원하고 누구, 야당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은수미 위원 간사가 하실, 간사 간에 협의는 안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면……

○이인영 위원 아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둘이 얘기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알려 드리는 게……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54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5건의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이완영 위원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03쪽, 10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항과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 그리고 조류

피해 예방범위 확대,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 문제와 지자체의 민간단체 설립·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심사가 보류되었는데요.

먼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바닥분수 등 전체 시설로 확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민간단체 설립·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문제와 공공수역의 점용·매립 시 규제조항 삭제 그리고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그리고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심사가 미뤄졌는데 조문별 내용은 다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보류사항 중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확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장하나 위원께서 아마 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설립·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보류가 됐는데, 이 설립·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여당의 반대 의견을 철회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경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하나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장하나 위원 제가 차관님께 좀 묻고 싶은 게, 보니까 민간시설 포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파악이 2010년 이후로는 안 됐나 봅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게 맞지요? 최종이지요? 당시에 공공·민간 합쳐서 1400개소 같아요. 하고 현재는 공공만 868개소고 전체를, 추정도 어려우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그렇지요.

○장하나 위원 추정도 어려우시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조그만 거는 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상황이 심각하니까 공공에서부터라도 좀 조치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원래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민간을 제외해서는 또……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민간도 일부는 포함합니다.

○장하나 위원 아,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있어서 놀이시설이 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향후에 좀 민간에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장하나 위원 예, 좀 그럴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공유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도 이번에는 공공을 포함한, 그러니까 공공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부의 계획을 좀 환노위에 공유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큰 놀이시설은 놀이시설에서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의 것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조그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그마한 거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왜냐면 이게 과태료 물리면 아파트 사무소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애들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소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이걸 관리, 법을 하면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법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장하나 위원 향후에는 못 들어가게 하든지 수질기준을 만족하든지 그렇게 가도록.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가도록,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전체를 넣어 놓으면……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통제가 안 되면서 너무 관



리가 영망이다 소리 들으면서 불만만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짧게 하세요.

○장하나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정부가, 수정안.

○이인영 위원 수정안 받는 거예요, 이제?

○장하나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미심사 사항 보고를 했는데, 지난번 다 보고를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내용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 된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영 위원 그것만……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만 남은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것만 남았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원하고 이거하고 2개 남았던 거 정리를 했으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견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46항부터 50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00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 것만 다 통과하고 있어, 지금.

○우원식 위원 좋은 일이지, 뭐.

○은수미 위원 지난번에 여당 의원 것을 다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저희 것만 쟁점으로 남겨 두셨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내용도 없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보고……

○소위원장 권성동 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로부터 정부 제도 개선 합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64쪽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듣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정부안을 보니까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기존의 세 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정부 합의안을 보면 그 내용과는 다소 벗어난 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보면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같이 발의되었을 때는 그것을 절충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오면 그것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는데, 기존의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은 주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합의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들은 기존의 안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개선안이기에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발의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합의안이라는 내용이 기존에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이나 의원들이 제출했던 법안 내용하고 워낙 상이하고 동떨어져 있고 유사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마는 지금까지의 심사 관행하고는 배치가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전혀 새로운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에는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때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 물리적으로 정부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어찌고 하려면……

○소위원장 권성동 안 되면 최소한 의원입법이라도 발의를 해야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우원식 위원 오늘 심의가 가능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오늘은 안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검토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수석실에서 검토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내년 2월이나 하겠네.

○최봉홍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 의견 없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야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런 의견이시니까……

○이인영 위원 수석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면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숙려기간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러면 이번 12월 중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빨리 발의하시면……

○이인영 위원 12월 말쯤에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5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니까요.

○이인영 위원 15일이 지나면 잡아당겨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잡아당기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인영 위원 상임위 거쳐서?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우원식 위원 이것은 해 줘야 되는 법인데.

○이완영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빼고 심의하는 방법은 없나?

○은수미 위원 아니, 불가능해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불가능해?

○은수미 위원 예, 지금 내용들이 달라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조정안이 그렇게 되고……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을 발의할게요.

법을 발의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요.

○우원식 위원 그래, 그렇게 해.

○이완영 위원 예, 그렇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의사일정……

이 자연공원법은 다 합의가 됐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난번에 논쟁이 되다가 공원지구의 행위 완화하는 것 때문에 논의가 되다가 합의를 못 봤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합의가 안 됐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공원해상휴양지구 거기 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합의를 아직……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심사를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제출한 법안도 있어요, 자연공원법.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했는데 보류된 것 있는데 그것도 묶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인영 위원 오후에 합시다, 바로 그것은. 오후에 권성동 의원님 안 올려 가지고 바로 합시다.

○우원식 위원 왜 이렇게 친절해?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 다 했어. 했는데 한번 더 논의해 보기로 했어.

○우원식 위원 내년 2월 달에 해.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20항에서 22항까지 같이 해야 되지요?

○은수미 위원 동물원법.

○최봉홍 위원 이것 지난번에 보류했잖아.

○소위원장 권성동 그 앞에 제가 46항에서 50항이라고 했는데 이것 8항에서 12항까지로 정정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46항에서 50항까지라고 했는데 의사일정 제8항에서 12항까지로 정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제가 이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20.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1.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동물원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동물원법은……

○우원식 위원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94쪽 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문제 등으로 심사가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조정안을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조정안은 누가 조정을 했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조정한 겁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장하나 위원님 그때 제출하신……

○소위원장 권성동 ‘동물원수족관협회 의견 반영 수정안’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분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이 건은 정부도 같이 관여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민호 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지난 주말에 동물원협회 측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쪽 협회에서 하위법령 쪽, 왼쪽 칼럼에 들어 있는 등록, 금지행위, 동물복지위원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쪽의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만약에 발의가 꼭 된다면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많이 위임을 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등록이라든가 금지행위라든가 자료 제출, 이런 내용들은 하위법으로 안 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법에서만 남겨 놔두면 좋겠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정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가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강제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금지행위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금지행위의 내용이 1, 2, 3, 4가 있는데 금지행위에서 4번으로 되어 있는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도 뺐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 2, 3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가지고 협회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의견을 줬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끝난 것 같고.

○우원식 위원 장하나 위원 뭐 얘기할 것 없어요?

○장하나 위원 동물 심사는 한 번도 우리 소위에서 조문심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계속 협회들과는 의견 조율을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물원법에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지금 동물원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들은 정말 많이 반영이 돼서 당초에는 한정에 의원님, 양창영 의원님과 수정안이 있었고, 또 그것에서도 오늘 이렇게 동물원수족관 협회의 의견이 들어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일괄 삭제하고 또 민간단체가 운영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위원회도 제정법에는 없애는 것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적절한 법이냐에 대해서 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김용남 위원도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숙려기간을 가집시다.

○김용남 위원 일단 제가 서민 복지, 장애인 복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동물 복지는 웬지 이게 좀 너무 생소하고 아주 어색해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은수미 위원 그것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수미 위원 그것은 외국에서도 하는 거니까……

○**우원식 위원** 세계 보편적인 게, 이제 동물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은수미 위원** 외국에서 그것은 그냥 하는 거니까, 처음 도입할 때는 생소하지요.

○**이인영 위원** 너무 처음부터 타박하지 마시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장하나 위원** 동물복지 부분이 그래서 이 법에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은수미 위원** 말을 뺐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장하나 위원** 그것도 뺐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를 왜 삭제할 해? 그것도 필요하지.

○**은수미 위원** 삭제해서 통과시키기……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인영 위원** 얘기를 들어 봐야지 우리도 무엇을 바꾸든지 말든지 하지. 아예 얘기도 안 하려면 그러시든가.

○**은수미 위원** 저는 얘기를 좀 들어 봤으면…… 제가 얘기를 들어 보자라는 것은 초기에 한정에 의원님이나 장하나 의원님이 했던 내용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후퇴가 됐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생소하다고 하면 장하나 의원님께서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후퇴하되 어쨌든 동물원 등에서의 동물학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동물원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또한 동물을 애호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는 여지도 꽤 많아지는 거라서 저는 필요하다, 이제는 삼성 에버랜드를 포함해서 이런 동물원들에서 함부로 동물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좀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갖추는 게 저는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이렇게 대폭적으로 후퇴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동의를 해서 좀 미래를 열어 보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저는 좀 놀랐어요. 동물

복지위원회 삭제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장하나 의원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후퇴를, 양보를 하셨으면 검토를……

○**우원식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하고 김용남 위원님께서 이 법안 제정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데 공청회 했을 때나 환노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사실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위촉한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했던 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취지를 살려서라도 통과하고 말고 이전에 일단은 한 조항 조항 조문 심사를 정상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계속 시기상조라고 해서 토론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가지고……

○**김용남 위원** 공청회, 나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거 같았는데……

○**장하나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위원님,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축조심사에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동물원법이 필요하나, 현재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법 제정……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앞에서 한 분만 강하게 주장하고 통과 안 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나 좀 들어 봐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 차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우선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동물원 수족관 운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게 무슨 문제됐던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이 동물원 수족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법이 오늘 반영된 수정안대로 하면 거의 형해화돼서 이런 정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결국은 최초로 제출되는 법안처럼 자꾸 의도를 해 가지고…… 제정안을 만드는 게 어렵지 개정법률안

을 만드는 거는 쉽거든요, 그걸 제정하는 것은.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동물원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관련된 기사라든가 뉴스 찾아보시면 이로 인해서 사육사들이 사실 사망사고도 1년에 한두 건씩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안에서 동물들이 정형행동이라든가 질병에 걸려서 결국 관람하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추세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 정도 차는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환경부도 공감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 때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님께서 이견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청회 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때 나도 와서 계속 있었는데……

○**장하나 위원** 그거는 공청회 자료를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공청회 자료를 지금 빨리 입수해서 김용남 위원님한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공청회 자료 다 드렸는데요, 우리가.

○**장하나 위원** 그때 새누리당에서 위촉을 한 전문가 의견도 동물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분명했고 이후에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전문위원 의견이라든지 보시면 이 법이 제정은 해야 된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예컨대 아까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동물복지위원회라든가 업계에서, 특히 민간이 우리 동물원 안에 들어와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더 다수인 관람객, 우리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물원에 가 보신 지도 오래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우에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해도 방치하여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든

가 관람객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좀만 검색해 보셔도……

○**우원식 위원** 여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주주 동물원의 바다코끼리를 말아야, 사육사가 아귀힘이 세진다고 해서 강제로 인대를 끊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 이게 뉴스 검색해 보면 한두 건이 아니야, 동물 학대야.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런데 질병에 걸린 동물을 일부러 치료 안 하고 방치할 이유가 있어요, 동물원에서?

○**우원식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게 동물 값보다 치료비가 싸면 치료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가축 전염병 돌 때 폐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면.

○**은수미 위원** 아니, 그건 사람한테 그걸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전염병이니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가축 개 개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격리 조치하고 치료를 해야지, 집단 폐사시킬 게 아니고.

○**은수미 위원** 치료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

○**김용남 위원** 이게 지금 수정안이……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쟁점 없는 법안으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쟁점 없는 법안이 없어, 지금.

○**우원식 위원** 그렇게 넘어가자고만 할 게 아니고……

○**이완영 위원** 쟁점이 많으니까, 지금 쟁점이 많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 쟁점이 아니라 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원식 위원** 무슨 쟁점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주자 한단거나, 거기에 무슨 표가 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세계적으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이제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왜 그거를 안 들어 주냐고? 무슨 동물원 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김용남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수준 낮은 발언을 하시면 이거 녹음도 되는데……

○**우원식 위원** 수준 낮은 발언이 아니고……

○**김용남 위원** 지금 이게 되면……

- 우원식 위원 뭐가 문제가 돼, 이게?
- 김용남 위원 이게 최종적인 수정안은 모르겠지만 이게 학대행위의 범위도 문제이고 여차하면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각종 동물을 이용한 쇼나 아니면…… 이런 논리로 하면 서커스도 지금 못 하게 해야지. 그게 과연 합당하느냐 말이지요.
- 은수미 위원 그것들 제한을 하자고 나온 거예요.
-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각종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쇼나 아니면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나 이런 걸 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인데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말이지요.
-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조문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니까? 왜 아예 심의도 안 하려고 그래?
- 이완영 위원 엇그제 북한 평양의 돌고래쇼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난리가 났더구먼.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면 아예 그런 것도……
-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자니까.
- 은수미 위원 북한은 따로 해야지요.
- 이완영 위원 아니, 세계인들이 다 관람을 한다 이 말이에요.
-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자니까.
-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정도 논의를 하고요. 보류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우원식 위원 이거 언제까지 보류하려고 그래요? 이거 좀 해서……
- 소위원장 권성동 언제까지…… 보류한 게 지금 한두 개인가요.
- 우원식 위원 아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권리를……
- 장하나 위원 아니, 뭐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 하고 하는데 이걸 대한민국만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동물쇼 말씀하셨는데……
- 소위원장 권성동 또 우리가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 갖고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 들어 보시고……
- 우원식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표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물은 표가 없잖아요.
-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요, 표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기본 방향이 맞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지요.

○우원식 위원 기본 방향이 맞지.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런 방향으로……

○장하나 위원 세계인들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에요, 동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게.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여기서 계속해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타결이 안 되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타결을 해 보자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니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 정도 하시고요.

○우원식 위원 심사를 좀 하자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법을 합시다.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23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우원식 위원 심사를 좀 하자니까요. 위원장이 뭐…… 독재야 뭐야 이게 지금!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대체토론 많이 했잖아요.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조문, 조문을 다 확인하신 겁니까?

○김용남 위원 봤어요. 봤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이상한 겁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다음 것 빨리 설명하세요, 수석.

○우원식 위원 아니,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이게 무슨 기업노동위원회입니까?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야당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좀 심사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동물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는 빼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보자고 하는데 아예 검토도 안 한다는 게 말

이 되냐고? ‘서커스는 허용하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용남 위원** 아니, 서커스나 동물원에서 하는 동물쇼를 보고 즐길 우리 아이들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허가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허가하고, 팔목 끊는 것 못 하게 하자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우 위원님!

○**우원식 위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신들의 철학이 중요하다면 남들의 철학도 중요한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마찬가지로 문제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좀 접근을 해 봐야지.

○**김용남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우리 지금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야당 위원 한 분이 반대해 갖고 처리 못 한 법안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여기서?

○**우원식 위원** 조금이라도 접근을 해 봐야지.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조문을 하나하나씩 보고 어느 정도 토론을 하시자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잠깐만요, 잠깐만. 그만, 그만하세요.

서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조금 가라앉히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일단 서커스는 하겠다고 받아주잖아.

○**우원식 위원** 아니, 뭔가 좀 얘기를 하다 해야지 그냥……

○**이완영 위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우원식 위원** 다음에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한 명의 위원님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은 동의하는데 한 두 분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는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명만 동의 안 하면 통과시키지 말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고 여야 간사가 있는 겁니다. 여야 간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좀 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볼게요,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하시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환경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대체토론을 하고 여기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사람한테, 여야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하나 위원님, 위임해 주시겠어요?

○**장하나 위원** 동물원법?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모든 법안 다, 동물원법을 포함해서.

○**우원식 위원** 기본적으로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설득도 하고 야당 얘기도 좀 들어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법 자체 심의도 안 하겠다고 차 버리면 무슨 맛으로 하겠어요, 이거를?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거는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심사……

○**최봉홍 위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이 합의를 해 줘야지.

○**소위원장 권성동**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국가 운영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으면……

○**이완영 위원** 쳐다보지도 않는 건 아니고……

○**최봉홍 위원** 자, 회의 진행합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저는 참 의문인 게 장관님께서도 동물원법 제정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속들어 가고 몇 번이나 협의한 게 이렇게 무위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이상하네요.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위원님,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야당이 반대하는 게 더 많습시다. 그럴 때만 정부 의견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주로 보시고 논쟁은 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조문 심사도 못 해 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조

문 조문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좀 보고 정부 입장은 어떤지 듣고, 다들 입장을 갖고 있는데……

○**최봉홍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생생물 보호법이, 동물 보호법이 있으니까 동물원법으로서 는 형성할 가치가 없다 이래서 심의도 안 하는 거지요.

○**장하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바로 드릴까요, 그러면?

○**최봉홍 위원** 아까 다 들었잖아요. 한두 번 들은 거 아니고……

○**장하나 위원** 지금 현재 야생동물 보호법으로는 CITES 종 40여 종밖에 규정을 못 해서 업계가 그 법으로 하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빠져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봉홍 위원** 업계는 지금 동물원법이라는 이름만 달자 그러고 있어요. 그거 달면 그다음 후속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업계가 이윤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동물 학대하는 것을 그냥 놔두자는 거잖아요.

○**최봉홍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심사조차 안 하는 거지요?

○**최봉홍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조문 심사를 안 해주니까……

○**우원식 위원** 아예 심사도 안 하는 거야, 앞으로?

○**은수미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조문 심사를 안 해주니까……

○**우원식 위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심사 자체도 안 해 주는 거야?

○**은수미 위원** 우리도 그렇시다.

○**김용남 위원** 아니, 양당 간사 분들한테 맡기자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건 곤란…… 조문 심사라도 해야지 양당 간사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기본 취지에서, 제정 취지부터 지금 이견이 있는데……

○**은수미 위원** 그러면 조문 심사할까 말까를 양당 간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제정 취지에 이견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건 심의하지마, 앞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심의 안 했어요, 거의. 안 들 어갔어요. 얘기하다가……

○**우원식 위원** 앞으로 하자는 것들 있잖아요.

○**이인영 위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동결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23번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69쪽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최봉홍 의원님께서 당초 발의한 개정안 중에서 일부, 국내 부분은 삭제하고 수출 부분만을 따로 내용을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계속 조문 내용을 보고드릴까요?

○**우원식 위원** 아니, 취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는 지난번에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취지에 동의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보고를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문별로 보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 전기·전자제품’ 및 ‘재사용’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개정안에서도 재사용과 중고 전기·전자제품 정의를 신설해서 폐 전기·전자제품과 중고 전기·전자제품 재사용업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중고 전기·전자제품 재사용의 대상에 당초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법적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72쪽의 재사용업 및 수출업의 등록 사항입니다.

당초 개정안은 모든 폐·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업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의견에서는 수출하는 폐·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업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재사용품 수출 시 보이스포싱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이 보이스피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377쪽, 폐 전기·전자제품 재사용업 및 수출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내용인데요.

수정안에서는 수출업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당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해당하도록, 대기업의 재사용업 등록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이 폐 전기·전자제품 등 재사용업자의 품목별 재사용 방법과 기준 준수 의무, 재사용품의 성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그리고 폐 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출 시 내역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제조업자의 표시제거 의무를 철회하고 동 준수 사항 의무 주체를 재사용품 수출업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제조업자의 표시제거 의무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업자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재사용품 수출업자가 그 물품을 수리·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할 것으로 예상해서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부의 기록·보존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석실에서 검토해서 일부 자구를 또 재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재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당초 이 법안의 취지랄까, 개정 취지가 중고휴대폰을 함부로 수출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까? 제일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중고품을 수출했을 때 수선을 한다든지 부품을 갈아서 수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 문제가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습시다.

○최봉홍 위원 처음에는 국내 다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는 뺐습니다. 재사용을 빼고, 수출 했을 때 보이스피싱 하고 사고 났을 때 문제 이런 사항을……

○김용남 위원 그런데 휴대폰별로 수출업자에게 그게 이력추적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단말기 고유번호 같은 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어느 수출업자가 어떤 개개 휴대폰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까지는 안 되고, 폐·휴대폰 업자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가공도 하고요.

가공하는 경우는 사실 수출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공한 것까지도 수출 되면 상표가 붙어 있으니까 원제조자의 책임이 다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 넘버까지 다 확인되는 그런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게 안 되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도 일단은 가공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돼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데, 나중에 결국 수출이 돼서 그게 유통이 돼서 외국 어디에서 사용이 될 때 이게 어느 수출업자가 수출했는지가 추적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되지요.

○김용남 위원 그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나오지요. 왜냐하면 제조 거기에서 변화를 주면……

○김용남 위원 그게 돼야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우원식 위원 그게 나오는데 이를 테면 삼성이나 LG 핸드폰이 갔어요. 거기서 고장 났어.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리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지요? 수출업자가 책임지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하는 자가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원제조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공을 했으면, 수출업자가 손을 댔으면 수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원식 위원** 그런 경우에 고장이 나면 수출업자가 책임질 때 너무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좀 그런 책임을 지우는 그런 체제입니다.

○**우원식 위원**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대고 안 대고 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직접 간다고 그거야 삼성이 갈 수 있다고 해도, 중간업자가 조금 손대 갖고 나가서 고장 났는데 그것을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책임져?

○**김용남 위원**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중고휴대폰을 산 사람이 이게 어느 수출업자가 한국에서 수출한 건지 그것을 알 방법이 있나요? 책임소재를 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표시를 하도록?

○**최봉홍 위원** 지금 대기업으로 나가는 것은 SK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이것을 잘못해 주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우리 대기업들의 신용도가 확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최봉홍 위원** 처음에는 대기업을 뺐는데 큰 기업들이 하나씩 이때까지 얻어 놓았던 그 내용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삭제해 달라 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 수출 나갈 때 지금 SK가 주로 하나씩, SK가 맡아 있으니까……

○**우원식 위원**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별로 대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장하나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 취지가 환경부의 소관 법안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중고핸드폰·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느냐 이 취지가 아니라 해외로 중고핸드폰을 수출해서, 그게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에서 다룰 법한 얘기들이어서 저는 환경부가 이것을 이후에 관리·감독하고 다루는 전문성 부분이라든가 일관성도 좀 의문이 드네

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이스피싱을 걱정해서든 아니면 이후에 아까 수리 같은 것, 이후에 책임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참 저도 생소한데 차관님도 그렇고 다 생소하지 않으실까……

○**우원식 위원** 중고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아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왜 환경부가 이것을 관리를 해?

○**장하나 위원** 기존에는 그런 규정조차 없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 규정을 넣으면서 중고핸드폰을 규제하려는 건데, 규제인가? 하여튼 다루려는 건데 우리 법에 들어오니까 좀……

○**우원식 위원** 산업부에서 하라고 그래.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부분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산업부에서 하라고 그래.

○**김용남 위원** 산업부에서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들 하기 싫은 것을 여기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사각지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요.

○**우원식 위원** 너무 안 맞아요.

○**이인영 위원** 그것을 수출했을 때 유해성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그 수출한 나라에 문제가 돼요, 환경부가 필터링하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가 여기에 담당할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사용이나 재활용 관계에서 제대로 사용한 자가 완전히 안 되면 그게 활성화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을 접근하게 되고, 산업부에서는 원제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장하나 위원** 산업부는 멋진 것만 하려고 그러네.

○**우원식 위원** 신중 검토!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계속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24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 심사하고 환경부 소관은 마무리하고 오후 2시에는 노동법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화학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보완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은수미 의원께서 제출하셨고,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학사고를 포함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비상대응계획을 법률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수정의견은 시·도 기본계획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조례로서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내용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별도 작성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마찬가지로 법률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조례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주민에 대한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개정안 제12조의2를 철회하고, 다만 제12조제6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서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등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전년도 대비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증가한 때를 비롯해서 화학물질 및 사업장에 관한 특이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사고대비 물질의 취급량이 변경하는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정보를 가공해서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이완영 위원 아니, 정부 의견부터 들어보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아니요, 마지막 조정안이 하나 더 나와서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의원님이 조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다시 조정안……

○은수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철회가 됐고요.

가장 문제가 된 게 7조 하고 12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7조의2 형태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화관법을 통과시켜서 화관법에 입각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를 해 보니 사실은 구멍이 생겨 버린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손발이 되는데 이 지자체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지자체 의견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환경부와 지자체하고 저희 의원실이 조율을 한 결과 그러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본계획, 그러니까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보의 제공, 행정 및 재정 지원, 기타

대비·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통합을 줌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게 낱장에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나머지 43조 이런 것들은 철회를 한 내용과 그다음에 제7조의2를 신설해서 통합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412페이지 그것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주민에 대한 고지는 삭제한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7조의2에 3호로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이렇게 철회를 하시면서 바뀌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조례로 했어요.

○이완영 위원 아, 별도 조항은 빼고 여기에 들어갔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냥 전반적인 조례에서 둘 수 있는 정보.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권성동 위원님 의견대로 현행법에 따라 주민들한테 이미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또 그것을 굳이 알려줄 이유가 뭐 있어, 혼란스럽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재난관리법에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화학분야를 또 하느냐 문제하고 고지 중복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재난관리법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학사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이완영 위원 차관님, 보세요.

지금 그게 중앙정부에서 이미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고지해서 중앙정부하고 내용도 안 맞고 빼격거리고 하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례도 봤지 않습니까?

굳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주민들한테 행정적 대처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3호 자체도 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관련 정보니까 이게 꼭……

○이완영 위원 정보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일정 부분 해 주는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니까……

○이완영 위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은수미 위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여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장들이……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3호도 빼도 나는 무방……

○은수미 위원 재난관리기본법은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사고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고지가 안 됩니다.

○이완영 위원 재난관리가 아니고 화학물질…… 현행법에 화학물질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은수미 위원 재해……

○이완영 위원 아니, 재해 말고……

○은수미 위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지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사건·사고에 대응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지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휘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화학물질사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잖아요? 필요하다면 하라는 얘기지요. 임의조항이지요.

○이완영 위원 임의조항이라도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하나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이완영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는 인터넷으로 공지하는 새로운 시스템……

차관님, 화학물질 정보 나와 있는 시스템 이름이 뭐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장하나 위원 이완영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조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역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근처에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라든가 특별한 업체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것은 그렇게 중복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보지 못하고 위협으로부터 많이 회피 노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위원 인터넷으로 공개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구미에 살아서 화학물질 많이 쓰고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서 구미시민이 환경부에 '구미공단에 화학물질 사용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소?' 그러면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민원으로 들어오면 알려주는데, 의원님 제안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보시스템만 되어 있으니까 시골의……

○이완영 위원 인터넷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행정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문의하면 받을 것 아니냐고요?

○장하나 위원 그거야 당연히 알려주는데……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뭘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겠다 이겁니다.

○은수미 위원 참여를 혹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부 시민을 전체 시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보통은 몰라요. 민원도 안 해요.

○이완영 위원 지자체가 사고 대비 이런 것은 좋아요. 제가 전부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임의규정이지만 정보 제공을 지자체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은수미 위원 아니, 정보의 제공을……

저는 이것은 중복적이지도 않지만……

○이완영 위원 왜 중복적이지 않아요?

○은수미 위원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은 심지어 중복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사고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수미 위원 이것을 막는 게 가장……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왜 합니까?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항상적으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중

일부는 민원도 제기하고 혹은 인터넷상으로 조회도 하게 하는 그런 중간다리들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완영 위원 지방정부가 새로 어떻게 구축도 못 합니다. 중앙정부 종합시스템……

○은수미 위원 못 하면 조례를 안 하겠지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효성 없는 것을 굳이 뭐 하러 넣으려고 그래요?

○은수미 위원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완영 위원 그것은 법적근거 없어도 알아서 하면 돼요.

○은수미 위원 법적근거 없이 어떻게 해요?

○이완영 위원 해도 되지요. 행정행위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원식 위원 이거 안전에 관한 법인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완영 위원 우원식 위원님이 안 들으시다가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나눠준 세로로 된 거 첫 페이지 있잖아요, 3호는 빼고 다른 것은 좋다, 내가 의견을……

내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은수미 위원 조례 없이도 된다면 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을 반대하세요? 오히려 법적근거 만들어 주는 게 좋지요.

○김용남 위원 7조의2제2항 부분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하여튼 자문은 모르겠지만 심의하면 이 위원회에서 관리 내지는 화학물질 처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처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1항에 보면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시행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조례에서 심의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권한을 못 발휘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한다는 것은 1항의 계획을 본다면 이렇게 할 때 심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게 막상 하다 보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사항은 심의하고, 이게 자칫하면 관리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할 수 있다’니까 화학업종이 많은 데는 이것을 할 것이고 없는 데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보면 이게 순수행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완영 위원** 차관님, 전반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 관련해서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별로, 우리 법에서는 적지요.

○**은수미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물어보잖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정부보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현재 1항에 있는 계획 수립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고에 관한 것, 화학물질 사고 대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현행법상 관련되어 있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현행법상 지금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우리 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들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국가재난 전체의 재난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총괄계획을 하거든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화학물질이든 자연재해든 전반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의원님이……

실제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지방청도 하는 게 있는데 시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원래 기본적으로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위원장 권성동** 지방자치단체에 다 시달하는데……

○**이완영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다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지요. 그런데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그 법에 좀 더 보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난 관리하는 기본법이 있는데, 그 법에 모든 것을 다 규율해야지 그것 찾다가 또 다른 법 찾다가, 개별법에 다 규정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난 사고를 그 법에 다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법은 전체 재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쪽이나 이쪽에 별로 관심이 적은 거지요.

○**이완영 위원** 왜 관심이 적다 그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여기 보면 지방에 재난 기본계획이 내려가니까 재난안전팀에서 주로 하거든요. 환경은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 그런 측면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을 한참 논의를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정부도 수용하겠다 했던 측면이 그런 측면입니다.

재난관리법에 하게 되면 재난관리체계, 행정체계도 다 되어 있고 법체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재난관리법이 있으면서 화학 관련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다 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 지방청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가져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 조정안이 조례로서 할 수 있게끔 임의규정으로 해 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제출했던 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본법하 고의 충돌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겠 습니까?

○이완영 위원 저는 소위원장 말씀이 맞다고 봐 요. 재난안전관리법에 이 내용이 더 포함될 수 있으면 하나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지 여기 따 로 법률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하나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본법을 시행하는 현장에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사실상 중요해서 지역 환경청이 화학사 고 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구미 불산사고 때 보셨지만 소방관이 나가서 물 뿌렸 습니다.

원래 구미 불산은 석회나 이런 것들을 뿌려서 그것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물 뿌려서 사고가 일 파만과 됐던 것이거든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니 정부도 이법에 동의를 하 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사한테 맡겨 주십시오. 맡겨 주면 제가 이인영 간사와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 고 한번 논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회의할 때 의사일정 제 34항 박덕흠 의원이 소개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 의 소개로 제출)**

(12시02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4항 박덕흠 의 원이 소개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 내용은 박덕흠 의원 등이 제출한 금강 법을 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번 수요일 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다 해 소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합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노동법 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합니다.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77)(계속)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6)(계속)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453)(계속)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9)(계속)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2)(계속)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36)(계속)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계속)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46)(계속)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8항부터 65항까지 27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통상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도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다음 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자료 2권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관련된 건데요.

권성동 의원님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명시하자는 의견이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 중복 할증을 명시하고 있고요. 김무성 의원님 안은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50%,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100% 가산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노동부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김무성 의원안 쪽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 해석에 따른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가산수당이 좀 높은 부분이 사실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위원 외국에 비해서 가산수당이 높다……

○은수미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용남 위원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돌아가면서 발언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 하나만 놓고 밤 새자고 그래도 끝이 안 날 텐데.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 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자, 8시간까지는 가산 수당을 50% 하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가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의견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의견이 없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인영 위원 반대……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은수미 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지금 근로시간 길이가……

○소위원장 권성동 제일 많지요.

○은수미 위원 예, 두 번째, 멕시코 없었으면 제 1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일 자리를 굉장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할증 요율—할증 요율을 일부 삭감해 주는 거지요—하는 것은 사실은 휴일근로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분리해 가지고 실제로 휴일에 시키는 근로에 대해서



는 연장근로 수당을 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상당한 혜택을 받던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토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그러니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것 이런 원칙을 그냥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예외 조항과 유사한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은수미 위원은 몇% 주자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그대로 100%로 해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연장 수당은 전부 다 100%?

○은수미 위원 예.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래야지.

○이완영 위원 8시간 이내도?

○은수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 휴일로.

○은수미 위원 휴일인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잖아요. 그러면 연장근로에 맞는…… 휴일과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은수미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상대의 의견을 폄하하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이런 표현은 자제하시고, 본인 의견만 타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유념해서 점잖게 이야기하셔야지.

○은수미 위원 이완영 위원님, 정부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이완영 위원 차관도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 잠깐만요, 두 분 서로…… 잠깐만요, 두 분……

○은수미 위원 차관은 괜찮지요.

○김용남 위원 잠깐만, 회의 시간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지요. 회의 시간에 그런 단어가 나와서 되겠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왜 괜찮…… 이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가 괜찮 이유가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발언 중단해 주시고 서로 의견만 정중하게 본인 의사만 잘 밝혀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인데 연장근로를 무조건 다 100% 가산수당을 매기자 그 얘기지요?

○은수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수미 위원 예?

○우원식 위원 아니……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연장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아니, 휴일근로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연장에 휴일근로하면 50%, 50% 해서 100%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개정하자는 것은……

○은수미 위원 33쪽을 보시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이 나오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 들어보세요.

은수미 위원님, 이제 40시간에다가 52시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은수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거기다가 이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논의하다가 의견이 갈렸는데……

이것은 이제 휴일근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렇지요,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연장근로가 평일 날 하든 어쨌든 간에 연장근로 8시간까지는 이것을 50%만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휴일근로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인영 위원 휴일근로가 없어진다고요?

○은수미 위원 없어지지 않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휴일근로 개념이 없어지는 거다,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은수미 위원 아니지요. 없어진다고요?

○이인영 위원 차관님, 분명히 ‘예’ 그랬어요, 휴일근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뭘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니까 휴일근로하고 연장근로를 합할 때 연장근로만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휴일근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연장근로 없이 휴일근로 할 때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이 되는 거고요.  
 ○이인영 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이제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병합할 때는……  
 ○이인영 위원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대로 있는 거고 그것을 연장근로하고 같은 가산수당을 할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휴일근로가 없다는 게…… 그러면 휴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게?  
 ○이완영 위원 휴일근로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주 52시간으로 하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휴일 날 하는 근로도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 시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50%밖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맞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렇지.  
 ○은수미 위원 그렇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휴일 8시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휴일근로로 50%를 더 가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키면서 그게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소위원장 권성동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적어 냈는지.  
 ○이완영 위원 대부분 외국의 가산수당은 25%입니다. 이것은 거의, 아까 글로벌 기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50%로 더블로 되어 있어요. 더블로 되어 있는데,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만 그냥 50%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현행 기준이에요, 현행보다 후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의원안이 나왔는데 저는 크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까 은수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목표고요.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해서 100% 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근로자들이, 특히 대기업의 노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산수당이 높을 경우에 휴일근로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첩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의 반대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ILO 권고가 25%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 이내도 100% 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휴일 1시간이 평일 2시간 풀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휴일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원식 위원 기업에서 안 하지.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는 하기 싫지요. 사용자는 하기 싫겠지만 오히려 평일에 생산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휴일 1시간이 평일 2시간 풀인데, 임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인영 위원 가산수당이라는 게 평일 날 근무하지 않고 휴일이나 이런 때 혹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야간에 연장하거나 심야에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 임금이 더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상식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휴일이나 정해진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근로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원래 그 취지하고 놓고 볼 때 지금 김용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김용남 위원 아니지요.  
 ○이인영 위원 그래서 가급적 가산수당이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사업주들이 정상적인 시간에, 휴일이 아닐 때 이렇게 근무하는 것들로 유도해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니까, 노동자들이 돈 더 받으려고 휴일이나 시간 외에 더 근무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김용남 위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화되어 있어요?  
 ○김용남 위원 이 작업 속도가 사실은, 그게 사실 노사 합의로 정하잖아요, 이 진행 속도를.

○**우원식 위원** 휴일근무 해서 두 배 받으려고 일을 잘 안 하려면 잘려.

○**김용남 위원** 에이, 어떻게 잘려?

○**우원식 위원** 잘리지, 금방 잘리지, 해고도 아주 쉽게 만들어 놔서.

○**김용남 위원** 그게 한 사람이 그러면 잘리겠지.

○**소위원장 권성동** 담당 국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의 경우 ILO 25%,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장과 야간은 25%, 휴일은 별도로 35%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연장과 야간을 각각 합산해서 25, 25, 50을 주고 있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구분 없이 1시간부터 휴일근로 하는 전 가산율을 35로 단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구분을 보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휴일근로 1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50%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계속적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특근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이런 형태가 주간 연속 2교대로 바뀌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사가 약정을 해서 근무패턴이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휴일근로에 있어서 50%에서 휴일근로 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100%로 가산수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산업현장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1시간부터 8시간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부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불리한 것은 OECD 국가, ILO 생 무시하고, 사용자들한테는 유리한 것은 그것을 동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니깐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 노동조건도 그런 수준까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여야 공통의 목

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OECD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당 백화점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가 있잖아요. 기본급이 현저히 낮고, 온갖 수당으로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빼고서 다른 나라를 단순비교 하면 돼요? 차관, 됩니까?

나는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그러려면 임금 구조도 개선하고 기본급 구조를 기본적으로 높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25%로 낮추는 이런 전체적인 개혁방안이라면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일근로에만 연장수당을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알량한 이유거든요, 그게. 그런 식의 논리 가지고는 이 법안을 저희가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려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무튼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심상정 위원**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의 차이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높일 경우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할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은 기업주들한테 페널티가 더 가해지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의 인센티브가 강한지 페널티가 강한지, 사실 경험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심상정 위원** 차관님, 기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심상정 위원** 아니, 연장근로를 누가 시켜요? 노동자가 자기 임금 때문에 연장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가 일을 연장해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적어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시다. 중소기업은 특히 그렇습시다. 근로자도 임금 소득 때문에 연장근로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위원님, 저도 중소기업을 5년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안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다른 OECD 국가를 보면 저희보다 가산수당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산수당이 높은데도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사실 증거상으로 보면 이런 가산수당 제도가 사실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그 반대방향에 대한 증거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센티브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수미 위원** 이 조항을 계속 논의해야 되나요?

○**김용남 위원** 이 정도로 논의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부는 현재 현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 50% 지금까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인데 또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에는 36쪽,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서면 합의에 의해서 3개월 단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완영 의원님은 1개월 단위·1년 단위로 확대하고 있고, 김성태 의원안은 1개월 단위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대신에 6개월 단위에서 특정주 근로시간 한도를 지금 현재 52시간인데 48시간으로 내리고 있고, 김무성 의원님 안은 1개월·6개월 단위로 하되 지금 현행 특정주·특정일 한도는 그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그다음 42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정, 홍영표 의원님 안도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것을 폐지하고 서면 합의에 의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하고 특정주 근로시간 한도는 지금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내리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첫 번째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김무성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나 또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42페이지에 있는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외국의 사례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최소한 주 40시간제 이하, 1400~1600시간, 우리나라가 지금 2100시간이니까요, 그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시간근로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장시간 근로를 오히려 조장하고 사실상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980년에 도입이 됐다가 1987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7년에 도입이 다시 됐지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일단은 도입을 해 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에 장시간 근로까지 온갖 이익을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당장 확대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이쪽에서……

○**최봉홍 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김용남 위원** 찬성 의견도 말씀하셔야지요.

○**최봉홍 위원** 찬성이지. 법안 내 놓았는데 찬성이지.

○**김용남 위원** 그러네요.

○**우원식 위원** 그래도 그 법안을 왜 냈는지는 설명을 한번 하셔야지요.

○**최봉홍 위원** 당의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 했지.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하셔야지요.

○**최봉홍 위원**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 2년 반 동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왔으면 거기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합의된 사항은 합의를 이루었고 두 가지 합의 안 된 것은 아직 합의를 안 이루었고, 합의된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는 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입법 차원에서 국회에서 맡아 달라,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적법하냐 하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걸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특별연장근로가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위원장 권성동** 2024년부터 특별연장근로가 다 폐지되면 이제 이것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주문 생산이거든요. 자기들 자체적인 생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주문을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분기별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을 해도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 특히 6개월 같은 건 노사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일단 논의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

○**최봉홍 위원** 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야? 연장·야간 같이 했을 때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아니고……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주된 반대 이유가 지금 현재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데 이게 시행 시기를 보면 2024년 1월 1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다 이게 52시간으로 이미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은수미 위원** 52시간도 장시간 근로입니다.

○**이인영 위원** 대략 그런 유의 얘기일 것 같아

서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탄력적인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에도 대개 40시간 미만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68시간 하던 것을 60시간으로 하고 52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종료되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에요. 실제로는 다른 나라는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2024년 이때 끝나는데’, ‘그때부터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때 되면 외국은 근로시간이 더 줄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탄력적인 근로시간 문제들이 얘기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2024년에 끝날 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기에요.

○**김용남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24년에 우리나라의 소위 뿌리산업 업체가 한 개라도 남아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지요, 뭐.

○**이인영 위원** 아니, 이거는 넘어가는 이유치고는 굉장히 이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24년에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이 한 개도 안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넘어가자고, 그런 유의 이유를 대면……

○**소위원장 권성동** 여하튼……

○**이인영 위원** 아니,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뿌리산업이 하나도 안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김용남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이인영 위원** 아주 엄청나게 매도하는 이유를 대면서……

○**김용남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뿌리산업이 국내에서 도급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게 시행 일자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잖아요. 보통 우리가 법률 제정하면서 이렇게 9년 후를……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제 제기를 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 52시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탄력적 근로 시간을 도입한 상당 나라들이 40시간 이하에서 그런 도입이라든가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점잖게.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나 또 연장근로수당을 줄여야 될 이유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 지금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적 의지는 없는 상태에서 그 전제는 다루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상태에서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거는 아까 뿌리산업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94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엇그제 통계 보니까 11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당이 좀 내면서 그러면서 여러 구체적인 분야별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완하자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밀어붙여 놓고, 벼랑 끝에 밀어붙여 놓고 지금 기업들의 사정만 살피자고 하니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기업들만의 사정을 살피자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기업과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임금 안정 때문에 양자를 절충해서 이렇게 낸 안이라는 점을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뒤에 가면 다른 때 얘기할 기회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 산업특근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게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으려고 산업특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이 휴일수당이라든가 연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을 더 받으려고 시간 외 근무를 더 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밤에 일하지요, 낮에 놓고. 그렇게 가치관을 완전히 전도시키는 데까지 논리를 비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정정하려고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은 2024년에도 52시간이고, 다른 나라가 탄력적 근무시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4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이 좀 다르다 얘기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오해는 말았으면 좋

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다음 항목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김양건** 44쪽의……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다 논의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양건** 아니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제에서 연장근로 금지하는 건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금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해서 2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 없이 48시간, 3개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왼쪽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정에 의원님이나 심상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할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근로시간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정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그다음.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46쪽의 연속휴식시간 제도 도입 관련해서 한정에·심상정 의원님께서 근로일 종료 후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는 연속해서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성태 의원님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교대제 운영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휴식시간을 1주 이내에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것은 야근이 불가피한 전문직이나 사무직 이런 경우에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추세를 봐서 이걸 나중에 현실을 파악을 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김성태 의원안도 안 된다?

**○은수미 위원** 제가 고용부에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고용부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서 가산수당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추세를 보면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 논리가 뭐예요? 한쪽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서 가산수당을

덜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휴일근로수당을 깎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정말 중요한 입법인데, 그런데 그것도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뭐예요? 동일한 세계적 추세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고용부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예측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지난번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간에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연속시간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업종이나 여러 가지 근무형태가 좀 복잡한 상황에서 연속휴식시간제를 11시간 이렇게 딱 설정해서 도입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다가 부담이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도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연속휴식시간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부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심상정 위원** 김성태 의원님 안에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다만 교대제 운영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애·심상정 안은 제쳐 두고 김성태 의원안은 여러 사업장의 근무 형태, 조건에 따라서 예외로 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하십시오, 김성태 의원안으로.

**○이인영 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상정 위원** 그게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연속휴식시간제도 자체가 지금 저희가 딱 임의로 설정을 해 놓는 몇 시간 이상은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을 기준법에서 지금 시점에서 반영을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일어나고 있는 근로 형태나 아니면 고용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는 거는 부담이 있다라는 게 정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어떤 부담인지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노사정 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요.

**○이인영 위원**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전체적인, 특정 하나 때문에 좀 부담이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용 형태가 현장에서 어떻게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짜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세 번이나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그 부담의 이유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실행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됩니다.

**○이인영 위원** 예측 불가라서?

**○소위원장 권성동** 이 정도 논의하고 넘어갑시다.

**○은수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 물어봤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많이 물어봤어요.

**○이인영 위원** 뭘 물어봤어요, 내가?

예측 불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예측 불가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직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상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기업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기상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

**○이인영 위원** 아니면 현장에서 혼란 같은 게 또 어떤 식으로 실행될지 예측이 불가해서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과 어떻게 매칭이 될까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하다니,

여기 정해진 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접근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때 관계 전문가 중에 그런 의견을 낸 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부담된다라고 의견 낸 관계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왜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후자의 의견을 대변하십니까, 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요.

EU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또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에게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하나 위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1시간 연속 휴식했을 때 영향받는 업종의 실 예를 하나만 들어 봐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 말고 우리 여야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 문제는.

**○소위원장 권성동** 됐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그거는 토론하고 싶을 때 토론하는 거지 무슨 위원이 발언하고 싶지도 않은 걸 발언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입장을 아직 안 내셔서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입장은 지금 다 냈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여당 위원님들 입장은 안 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만 발언을.

**○심상정 위원** 제가 언제 강요했다고 그러십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인영 위원** 사회 좀 봐.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사회 보는 거예요, 지금.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주문을 드린 거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대체토론을 하세요. 물론 질의를 하시고, 여당 위원들 보고 자꾸만 발언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심상정 위원** 자꾸 한 적 없어요.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처음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심상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당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이고 과거에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김성태 의원이 여당 의원인데 우리는 김성태 의원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정부안, 정부의견하고 똑같아요, 논리는.

**○이인영 위원** 여기 고용……

**○장하나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변 듣고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 엄대섭** 임금근로시간팀장 엄대섭입니다.

말씀하신 예로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나 생산직 중에서 연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그런 업무,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TV, 연속 촬영 이런 경우에 중간에 휴식시간을 11시간을 부여하고 스케줄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가스나 안전 부분 이런 부분도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넣었을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논의해서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노사정에서의 추가 논의 결과를 우리가 수용만 하는 환노위 법안소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시지요. 아주 특수한 경우, 들어 보니까 방송·촬영 그거는 좀 인정이 되네요. 13시간, 14시간 갈 수도 있지요, 촬영하는 대상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지금 11시간 휴식이 엄청 긴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13시간까지 근로한다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가 이미 불법적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위법적인 상황이 만연한 거를 해소하자고 넣은 것이고 절대 이게…… 아까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그러니까 노동부의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말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규제를 더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불법적인 상황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 주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방송이나 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해서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는 방향을 이 자리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게 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도 이 법안을 냈는데 지금 노동부가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사업장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도로 지금 김성태 의원님 안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예외로 두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실정들을 감안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예측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이미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김성태 의원님 안으로 하면, 그런 정도까지 양보가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여기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인영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있었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세요,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이견이 있는 건 저도 이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나 노사정에서 논의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등등을 보면 이런 방향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향의 문제들은, 기업의 부담 문제들도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정이든 팀장님 말씀이든 지금 김성태 의원님 발의안이든 그런 정도에서 나온 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요단강처럼 이렇게 멀리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거의 없지요.

**○은수미 위원** 저도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확인만 할게요.

아까 11시간 연속휴게제는 노사정에서 계속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라고 이유를 하나 대셨는데, 그러면 아까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을 50%만 하겠다라는 건 노사정에서 합의가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논의를 할 때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변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는 것이 옳겠다고 그때 노사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도 노사정에서 계속 논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리고 이 부분은 은수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부분은 이번 회기에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고 그 이외의 이런 부분들은 내년 5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노사정 합의’라고 얘기를 하려면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건 일괄적으로 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노사정으로 합의 안 된 어떤 건 그냥 들고 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세계적 추세,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건 또 노사정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걸 저는 정말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저희들이 특히 여당 법안, 혹은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정말 예측 가능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건 노사정 합의도 안 해 놓고 이걸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해서 했다, 왜…… 또 어떤 경우는 세계적 추세다, 또 어떤 경우는 노사정 합의가 안 돼서 유보를 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

고, 정말 법안을 뭐라도 통과를 시키려면 저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하여튼 노동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직하고 전문직 제외하고 생산직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김양건** 48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자라는 안인데요.

지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지급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관련된 것이 기간제법상에서의, 심상정 의원께서 그때 하셔서 가지고 기간제법상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현재 제안된 것은 통상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가산수당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통상근로자는 그렇게까지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고, 그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도, 8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나 덴마크, 핀란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들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꼭 그렇게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이렇게 토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그런 논리 말고 조금 더 고급 논리를 말씀하시든가 그래야지 너무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나라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동들이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어요?

○**이완영 위원** 통상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예가 나오나요, 심 위원? 아까 시간제는 정해 놓은 시

간보다 오버하면 나오는 건데 통상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냐고요,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말고?

○**심상정 위원** 있지.

○**소위원장 권성동** 다 법정근로시간 이상 하는 것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소정을 그러면 40시간보다 줄여서 정해 놓을 경우의 얘기예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알바라든지 단시간 노동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는 근무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떠나서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큰 부담이 없지요.

○**이완영 위원** 아까 차관 설명이 시간제는 아니고 통상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지금 심 의원 발의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질문을 하는데 통상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간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법안이 바뀌었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차관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여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놨을 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경우예요?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지금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률에 의해서 약정한 시간을 넘어가면 40시간 이내라도 현재 가산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자체를 통상근로자보다 낮은 형태로 정해 놨습니다. 통상근로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40시간의 근로자를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자보다 낮은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그 법률에 의해

서 약정한 시간을 넘어가도, 40시간 이내라도 다 가산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부분이 있고, 통상근로자는 기준법에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받고요. 그러면 40시간에서 더 낮게, 단시간근로자도 아니고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그러면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상정 위원** 있지요, 그런 예가.

○**이완영 위원** 바로 그런 해당자를 위해서 심의원이 발의한 것 같은데 그거까지 우리 근기법에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 경우에는 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그 간격에 있는 거는 당사자 간에 충분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근로조건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죄송하지만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심 위원님? 단시간 근로자들이 6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뒤에 정리하고 어찌고 해서 7시 반까지 이렇게 일하는 경우 1시간 반 정도 더 일하는 거잖아요, 통상근로자들 말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률에 의해서 가산수당이 부과됩니다, 50%씩 가산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내가 통상근로자에는, 방금 그런 얘기라…… 이거는 심 위원이 양해해 주셔도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

○**심상정 위원** 양해는 뭐…… 심 의원 게 의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50쪽.

○**전문위원 김양건** 50쪽 포괄임금계약 금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기 위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시간, 가산임금의 액수를 명시하도록 한정에 의원님은 주문하시고 있고, 일부 의원님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의견입니다.

장하나 의원님은 임금포괄산정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한 후 그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이걸 또 금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판례 수준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더 엄격하게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는 영세기업하고 근로시간 구분이 어려운 분야, 예를 들면 외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효성 있게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이게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포괄임금계약은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에, 말하자면 포괄임금계를 채택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악용되고 그 폐해가 지적이 되면 법에 따라 준수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효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자는 건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니까? 법을 그냥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연장·야간·휴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장·야간·휴일을 포괄해서 맺는 계약

자체가 모두 불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판례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와 같은 포괄적으로 맺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안에 의하면 그걸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즉 얘기하는 통칭 포괄산정 임금 계약 자체는 제한을 해야 되고 위반하면 형사벌이 부과되는 부분인데 현재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그 형태의 계약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실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카운트가 가능한데도 그와 같은 포괄임금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안 주게 되는 거는 현행 법원에서 그거는 줘야 된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법원의 판례나 그와 같은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관계되는 내용을 지도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필요한 임금을 당연히 받도록 지도하고 사건이 들어오면 법원 판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포괄임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97년에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되다가 2010년 판결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엄격하게 한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지금 딱 얘기하시는데,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 판결의 기준을 고려해서 이런 개정안을 낸 거예요. 97년하고 2010년 판결을 보셨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봤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거꾸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게 ‘법원의 판례에서도 포괄임금제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97년에는 허용하는 방향이지만 2010년에는 분명하게 규제가 돼야 된다고 판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그 방향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요, 이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포괄임금계약의 허용 범위가 엄격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포괄임금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줘야 된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법원이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포괄임금 약정·계약 자체는 노사가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법안으로 만든 게 제 법안 아닙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해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런데 연장·야간·휴일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자체가 포괄임금의 한 형태인데 포괄임금의 계약 형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자는…… 법원의 판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금지조항을 개정안에 마련한 취지라고 본다면 정부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정 위원** 무슨 말인지……

**○장하나 위원** 그래서 이 토론에서 빠진 게, ‘정부는 아니라고 본다’의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심상정 위원**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법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법원은 규제해야 된다고 판결을 하셨거든요.

**○이인영 위원** 법원에서 규제한다고 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시라고요.

○장하나 위원 정부 입장에서 기본급하고 가산수당 이것을 분리하면 왜 안 돼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를 들어 법원이 예시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해서 포괄임금계약 자체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업종은 업종별로, 직종별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 자체가 어느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직종으로 구분한다거나 단순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저나 심상정 의원님 안을 보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보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보면 포괄임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급과, 그러니까 방금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은 기본급은 얼마인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넣어서 명시해서 포괄임금계약을 하라니까요, 어디까지는 기본급이고 어디까지는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측정 불가한 부분.

그런데 그것도 전혀 없이 지금 현재 포괄임금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많은 분쟁을 현장에서 낳고 있어요.

기본급은 얼마이고 플러스 얼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원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임금의 계약 형태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다 합쳐진 정말로 하나의 포괄임금 형태가 있고, 기본급을 정해 놓고 나머지 수당에 있어서의 포괄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있어서 법원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계산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게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형태

를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기준으로서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줘야 되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당초에 당사자가 계약한 그 계약의 내용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심상정 위원 실장님, 그것을 왜 꼭 재판부까지 가져가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재판부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사용자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기준을 법안에 포함시켜서 정리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장하나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틀린 게 근로계약서 쓸 때 근로시간을 아예 안 적고 그냥, 오늘 몇 시간 일할지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기본급 문제도 나오지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어느 정도 논의됐으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포괄임금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요. 내가 보기에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제 위원 나도 질문 좀 할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제 위원 포괄임금계약 무효를 입법으로 하는 예가 어디 있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것은 없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면 심상정 대표님이 무효로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원식 위원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상정 위원 97년에는 포괄임금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이것을 악용하는 폐단이 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로 하니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포괄임금제, 이 부분은 무효로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인제 위원 무효로 하면 일반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심상정 위원 이것은 지금 판례에서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까지 가지 않도록 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개정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인제 위원 처벌규정은 없지요?

○심상정 위원 처벌규정이 있을 걸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인제 위원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이 없네요.

○심상정 위원 제 안에는 처벌 안은 없네요.

○우원식 위원 뒤에 가서 처벌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인제 위원 아니지요. 새로 신설하는 조항인데요.

○우원식 위원 그렇네요.

○심상정 위원 저는 그게 없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안에 형사처벌이 있네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심상정 의원님 안은 무효가 되고 장하나 의원님 안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인제 위원 장하나 의원님 안도 똑같은 거예요? 무효로 처리하는 거예요?

○장하나 위원 아까 전에 무효로 해서 별척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원천 무효니까?

○심상정 위원 예.

○장하나 위원 저는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척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항목, 56쪽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56쪽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관련입니다.

지금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급휴가까지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휴가사용 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휴가사용시간 보충이 가능하도록 해서 선후가 사용 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하고, 휴가시기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등 그런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영·김무성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완영 의원님은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해서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김무성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후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휴가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이인제 위원 찬성합니다.

○은수미 위원 찬성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인제 위원 저축했다가 쓰는 것이니까요.

근로자의 의사,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수미 위원 우선 저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에 대해서 노사정이 논의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노총이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노총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은수미 위원 예, 합의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논의를 하기로 한 사안이었지요? 어땀어요?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사실 제가 계속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가 없었습니다.

○은수미 위원 논의를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여기까지 논의하기……

○은수미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한국노총은 저희들한테 논의를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대표적인 조항으로 이 조항을 하나 들

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논의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은수미 위원** 그런데 왜 들고 나오셨어요? 여기에 왜 넣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은수미 위원** 아니,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왜 법안에,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노사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에 넣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사정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고 해서……

이것은 법안이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법안에 넣었다 안 넣었다 얘기가 아니라 노사정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서 긍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논의가 없었던……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한국노총은 야당에 명시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합의 위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합의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합의가 있어야 그것을 위반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합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위원님 통해서 의견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이 이것저것 많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 한국노총이 저희한테 말한 것은……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질문은 단순해요. 한국노총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은 사실

상 노사정 합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올렸다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라고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올리신 것인지, 그러면 한국노총이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노사정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말, 4월이 되었고, 노동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반대다, 아니면 찬성이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은수미 위원** 3월, 4월이 아니라 이번 9월 15일…… 3월, 4월이라고 하시면 또 헛갈리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

○**소위원장 권성동** 휴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임금 보상을 선택하느냐는 근로자한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나는 임금 보상 대신에 휴가를 선택해서 내가 휴가를 더 쓰겠다 하면 휴가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내가 휴가를 다 못 썼다 그러면 임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연차유급휴가, 법정휴가도 14.2일 중에 사용하는 게 8.6일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5.6일 정도 돼요. 지금 있는 것도 못 쓴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축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노동자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야간근로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렇게 쓸 수 있는 일부 노동자와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양극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저축한다는 게 말이 좋아 저축이지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쓰고 반납하면서 일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작동할 수 있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인제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제 위원 선진국 입법례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독일의 나머지 법을 다 수용하면 그러면 쓸게요, 독일의 나머지 좋은 노동법들 다 수용하면.

(웃음소리)

○이인제 위원 그러면 독일하고 노동시장 통합을 해야 되겠네요.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요.

○이완영 위원 이 조항의 취지는 여름에 유럽 근로자들이 한 달간 장기간 휴가 가는 게 부러워서 우리 근로자들도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단계적 진전입니다.

○은수미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인제 위원 하여튼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62쪽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관한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면 합의에 의해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추정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63페이지에 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꿀 경우에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커져서 노사 간 갈등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원래대로 “본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별 이견 없을 것 같은데요.

○은수미 위원 아니, ‘본다’로 하는 것하고 ‘추정한다’라는 것 다르긴 한데요.

○이완영 위원 나는 ‘추정한다’로 하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것 같아.

○은수미 위원 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부분도 의견 일치가……

○이인영 위원 한번 말씀을 들어 봐요, 왜 추정한다고 그러는지.

○심상정 위원 제가 이것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항을 특별히 유념해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보류하고 갑니다. 64쪽.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64쪽에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또는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부 위원님께서서는 특정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지금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고, 김무성 의원님에 대해서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축소된 업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70쪽에 특례업종 조정을 특례제도 유지업종은 10개, 특례제도 제외업종은 16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의 업종으로 축소하자는 김무성 의원님 안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 있는 항목인데요, 먼저 특례제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61년 이후에 특례업종이 조정이 안 돼서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사정에서 어쨌거나 한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그것도 자세하게 항목별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현재 김무성 의원님 안 상태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로 의견 주신 것 중에는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년 5월까지 구체적으로 실태파악 하고 연구를 좀 해서 개선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노사정 연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노사정 다 끝났는데 뭘 또 노사정……

○소위원장 권성동 합의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부분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개선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내년 5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이인제 위원** 그것 무슨 소리야? 지금 내년 5월 얘기가 왜 나오지?

○**이완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합의가 10개 업종 존치에 대해서 어떤 어떤 업종까지도 합의가 됐나요, 아니면 10개로만 두자라고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71쪽에 보면……

○**소위원장 권성동** 내용까지 다 합의된 것이 김무성안입니다.

○**이완영 위원** 자, 내용까지 다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많이 삭제하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특례제도를 유지해 줬는데요. 지금 계속 음식업이 제외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음식업은 특례업종으로 두어야 된다고 각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요. 노동부도 알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현행에서 음식업이 몇 호에 있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현행 규정으로 보면 접객업으로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음식업이 접객업이에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접객업 안에 음식업, 숙박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70페이지 표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조문으로 보시려면 68페이지 제일 왼쪽 편에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접객업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접객업을 빼버리니까 그렇잖아, 김무성 의원안이.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접객업이 음식·숙박업하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주점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접객업은 살려야 되겠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례제도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자,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야당의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장하나 위원** 특례업종을 남기지 말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전부 다 없애자? 특례업종을 전체 다 폐지하자?

○**이인영 위원** 폐지하자는 것도, 줄이는 건 조금……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이 다 틀리니까……

○**이인제 위원** 줄이는 건 좋고 야당은 다 없애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없애자에서부터 줄이자까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없애자는 것과 줄이자는 것 사이에, 물론 저쪽보다는 더 줄이자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어디서 정리해야 될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율을 못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아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야 간사한테 일임합시다.

○**이인영 위원** 줄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고……

○**우원식 위원** 남은 업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인제 위원** 아니, 또 다음에 20대 국회에 가서 하면 되지.

○**우원식 위원** 20대 국회에 기회가 없어요, 이게.

○**이인제 위원** 20대 국회의원 안 해?

○**우원식 위원** 아니, 이것 해 놓으면 박근혜정부에서 아예 그냥 못을 확 박아……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정서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음식점업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어때요? 짧게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현행 김무성 의원안대로 음식점은 특례업종에서 빠져야 된

다는 판단입니다.

○이완영 위원 뭐야, 그것은 장관도 음식점업은 유지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구만.

○소위원장 권성동 뻘으면 좋겠다? 뒤에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왜냐하면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입장을 제대로 지금 위에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와.

○심상정 위원 새누리당 입장하고 다르면 뭐 당정 협의 따로 하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완영 위원님,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전문위원 김양건 72쪽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제외규정 삭제 관련된 건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은 앞에 부분하고 같은 연장선상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양건 아니요, 이것은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토지 경작·개간, 농업, 감시·단속 근로자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삭제하자는 내용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72페이지 왼쪽 표에 적용제외대상을 보면 농림·축산법,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불가피한 업종들이 있고요. 또 감시·단속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높거나 엄격한 적용이 불합리한 이런 경우에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U에서도 1차 산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년 5월까지 실태조사를 좀 더 분석을 통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전문위원 김양건 74쪽에 연소근로자 법정근로

시간 단축하는 건데요.

지금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도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것은 저희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자칫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기업주가 연소근로자 사용을 기피해서 오히려 연소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는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왜 말끝마다 무슨 고용 핑계해. 그런데 왜 우리나라 고용률이 그렇게 낮아요, 그 래?

그 이전에 연소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해서 국제적 기준이 있고 최소한 선진국으로서 그런 기준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국제기준을 봐서도 우리가 특별히 보호가 약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일본은 우리하고 같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더 많고요.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니 까 우리보다 1시간 더 많습니다.

○은수미 위원 연장근로가 없잖아요?

○이인제 위원 아니, 주 40시간은 같잖아?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것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주 40시간은 같지만 1일은……

○우원식 위원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은수미 위원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이인제 위원 독일도 1주 40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이 부분은 노동부가 시기상조……

○심상정 위원 제가 그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 리겠는데요. 실제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불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거기는 우리처럼 법을 어떻게든지 어겨서 법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법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이고 실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이것을 정하자고 하는 취지는 법이 아니면 마냥 우리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이인제 위원 아니, 프랑스가 35시간으로 하고 있네, 프랑스가. 이것도 좀 연구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의 가이드라인이 최소 기준인데 우리는 최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77쪽 이것은 근로시간하고는 관계없고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라는 내용인데요. 4인 이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으로 확장해서 적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부분도 저희가 노동연구원 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년 초부터 5월까지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내년에 언제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부분은 내년 5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시키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입주해 있는 사람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은 이해가 되는데 가사사용인은 못 넣어요.

○은수미 위원 외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것은 도덕과 윤리의 세계에서 해결합시다. 강제노동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은수미 위원 잠깐,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ILO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

고요. 외국에서도 재택근무와 같은 가사사용인을 쓰는데 실제로 그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계산하는 것 외국 것 빨리 준비하세요.

○이인제 위원 외국 입법례 뭐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은수미 위원 입법례는 무지하게 많고요.

○이인제 위원 가정부에 대해서 외국에서 근로기준법 어떻게 적용합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를 한번 찾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의 법률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고종사자인지,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보호나 아니면 그것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부처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몇 % 돼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전체 우리나라 사업장 숫자는 한 175만 개 있습니다. 그중에 4인 이하 사업장은 110만 개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10%가 넘네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5%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합시다. 내가 이렇게 전향적이네.

○우원식 위원 하자고?

○이완영 위원 예.

○우원식 위원 하자고 세계 얘기해, 세계. 조그맣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듣지.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에는 63항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 청원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논의 후에 같이 병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아까 63쪽에 제가 답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다’하고 ‘추정한다’ 그것을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게 그런 거네요. ‘추정한다’로 바꾸면 반증을 통해서 노사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추측은 됐는데 확신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강압적인 상황에서 7시간 반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실근로시간은 8시간 반이다. 실제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례가 법적 다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변 쪽의 견해로 제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가 마쳐졌고요.

이제 80쪽 경영상 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임금 체불 시 대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 보는데 잠깐 쉬었다가 4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36)(계속)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계속)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8항까지 10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경영상 해고에 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80쪽의 49항부터 58항까지 경영상 해고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해고의 요건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 우선재고용 관련된 건데요. 해고 요건 관련해서, 절차적 요건인데 82쪽에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그 표에 의해서 그 뒤에 조항이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들별로, 지금 현행 규정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 되고 해고 회피노력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행 조항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해고 회피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에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안으로 85쪽에 조항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되기 때문에 그 표에서, 경영상 필요의 요건은 현행에서 심상정 의원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축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장래의 경영 위기 대처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김성태 의원안도 축소를 하고 있는데, 84쪽에 보면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안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범위를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고 회피노력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님은 예시로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 배치 등을 해고 회피노력으로 예시를 하고 있고, 홍영표 의원님 안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 배치 이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자산 매각, 업무 조정, 근로시간 단축, 최봉홍 의원님 안은 근로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지, 전환 배치, 김성태 의원님은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그다음 84쪽입니다. 강은희 의원안은 근로시간 단축, 휴업, 근로자의 배치 전환, 이종훈 의원님 안은 근로시간 단축, 전환 배치, 여유자산 매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 안은 서면통지를 규정을 하면서 협의사항을 해고 시기, 해고 예정인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안 경우에도 서면통지를 규정하면서 해고자 선정 방법, 해고 시기, 해고 예정 인원,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님 안 경우에도 협의사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5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9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기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경우에도 해고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시기, 해고 예정인원 등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기윤 의원님 안은 협의 내용,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해고 시에 신고하도록 지금 규정되고 있는,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 안은 위반 시에 과태료를 규정을 특별히 하고 계시고, 심상정 의원님 안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85쪽 각 조항부터 해서 우선재고용 앞에까지, 지금 109쪽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린 조항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는 권성동 의원님 안에 따라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해서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그걸 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것은 법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할 때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큰 방향에서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 같이 이것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행 판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해고 회피노력과 관련해서는 예시 조항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소위원장 권성동**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반드시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너무 경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별 다른 게 없고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통지 조항을 집어넣고 또 협의사항을 다소 확대하는, 해고 시기나 해고 예정인원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해고 시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금은 없는 것인데 벌칙, 과태료가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기준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위원님들, 뭐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의견도 각기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의견에 대해서, 중심으로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차관님, 권성동 의원님 안에 찬성을 하면서 해고 회피노력 속에 신규 채용 금지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82페이지, 해고 회피노력에……

○**소위원장 권성동** 신규 채용 금지?

○**최봉홍 위원** 예,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 배치 들어가 있는데 신규 채용 금지가, 중지……

○**이완영 위원** 최봉홍 의원안에 있던데.

○**최봉홍 위원** 예, 그걸 넣어 가지고 같이하면 더 낫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심상정 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안 기준으로.

○**심상정 위원** 예?

○**이완영 위원** 정부안 기준으로 멘트를 해 주시라고, 위원장께서.

○**심상정 위원** 아니, 왜 제가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을……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아니, 그렇게 찬반토론하면 편할 거 같아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는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신 공약이었어요. 정리해고 요건을 약속을 했고 또 전경련에 가서도 대기업 회장들에게 정리해고 자제를 주문하시기도 했고, 고용노동부도 13년 1월 달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도 냈지요.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정리해고, 우리가 고용 보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구는 왕창 터주고 출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고의 길은 대폭 열어 주고 고용 보장을 백날 이야기해 봐야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직성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직성을 갖고 있다, 고용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OECD, 한국노동연구원 13년 용역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규모 정리해고 제한지수가 30위예요,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시지요?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만큼 아주 고용이 유연한 나라고요. 초단기근속의 나라예요. 22개 회원국 중에서 장기근속자 비율이 18%로 최고 적은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가장 넓은 나라다, 확대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안을, 그

리고 이 부분은 여야가 상당한 정도로 전반기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안이고 당시에 그래서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가 야당안에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희 안을 양보하고 김성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좀 질문 겸 의견을 내면, 지금 특히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레이오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우리처럼 요건이 까다롭지 않단 말이지요. 레이오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레이오프가 지금 우리 식의 경영상 해고, 소위 정리해고하고 완전히 개념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경영상의, 소위 경영상의 좀 리스크가 보인다 그러면 레이오프를 한단 말이지요. 그랬다가, 했다가 우선채용은 나중에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우선채용을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레이오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 안 되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금 미국식의 레이오프는 안 되는 제도인데. 그래서 여기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더 강화하는 거는 조금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시를, 해고 회피노력 예시를 다 하면,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조문에 예시된 거는 다 하고 그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노력을 다 안 한 걸로 지금 해석하는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법원에서는 오어(or) 개념으로……

○**김용남 위원** 오어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우원식 위원** 이거, 저거를……

○**소위원장 권성동** 자, 우원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 위원님……

○**우원식 위원** 이미 13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미진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하자는 거고, 정부 현행은 양도·인수·합병 등등 이렇게 해 갖고 이걸 포괄적으로 막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인권위원회에서 굳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우리 노동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있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한다면 이거는 심상정 의원안이나 김성태 의원안이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부터 이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지, 대통령 공약도 있고 인권위원회 권고도 있는데 이거를 권성동 의원안과 같이 현행과 같은 걸로 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는 전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은수미 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김성태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논의를 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정리하고 요건 강화였어요. 그런 필요를 인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반영한 김성태 의원님 안과 비교할 때 권성동 의원님 안은 상당히 후퇴를 한 건데, 그러면 정부가 기존의 공약사항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아, 이완영 위원님……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기본적으로 경영상 해고는 해고를 많이 터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1000명이 근무하다가 300명 해고하고 700명 가지고 회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700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살면 또 1000명, 15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심상정 위원이 노동 경직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경영상 해고에 관한 유연성은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고, 일반해고 요건은 경직성이 매우 강하지만 우리가, 집단해고지요. 이 집단해고는 조금 쉽게 돼 있다고 국제적 평가가 나온 거는 사실입

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김성태 의원안과 권성동 의원안하고 차이가 결정적인 게 뭐냐, 정부가 빨리 그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지금 권성동 의원안 제안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안하고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저기,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먼저 공약사항을 정리하고 요건 강화라고 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약속사항은 해고 회피노력의 요건을 강화하는,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새누리의 약속으로 보면 정리해고 전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 강화라고 공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안과 권성동 의원님 안의 차이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실체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현재 현행의 규정과 판례보다는 훨씬 더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좁히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현재 법원의 판례가 인정하는 폭보다 훨씬 더 좁게 경영 악화라는 이중적인 요건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또.

**○소위원장 권성동**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만 차이 나냐? 다른 거 옆으로……

**○우원식 위원** 그런데 그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아니요, 뒤에 해고 회피노력도 있는데요.

**○우원식 위원** 그게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그때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노동자 자살, 여기에 우려를 표하면서, 그러면서 전경련을 방문해서 대기업 회장들한테 “정리해고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까다롭게 해야지,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하는 걸 이게 병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정리해고가, 병병하게

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하게 하고 제도를 까다롭게 개선하겠다는 거니까 도저히 회사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는 돼야 정리해고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야 좀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왜 그걸 분명하게 안 해.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건데. 대통령도 얘기했지, 인수위도 얘기했지, 인권위원회도 얘기했지, 그런데 노동부는 도대체 뭐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래서 이번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서 해고를 할 경우에 해고 회피노력을……

○**소위원장 권성동**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다 피력을 하셨고, 문제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2개가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이고 그다음에 해고 회피노력 이후의 사항은 절차적 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실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 차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의를 하고 보류하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전체적으로 다 대체토론한 거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몇 번이지요? 임금체불 대책.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10쪽에 보편요, 110쪽에 우선재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우선재고용 관련도 절차적 요건으로 보고……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제 그만하고 저쪽으로, 임금체불로 넘어갑시다.

○**은수미 위원** 이것도 검토를 안 해요, 우선재고용을?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임금체불 134쪽.

○**전문위원 김양건** 134쪽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해야 되니까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39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9항에서부터 62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이 부분은 임금체불 대책 관련해서 각 의원님들이, 김경협 의원이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도, 은수미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임금대장 기재사항 명시, 정부안은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도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제재방식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6쪽의 임금체불대책 관련해서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지급 문제는 김경협 의원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시,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고, 권성동·안효대 의원님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부분은 먼저 재직근로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에 있어서요.

먼저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37페이지를 보시면 김경협 의원님 안에 ‘지급방법, 미지급 임금’ 해서 미지급 임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근기법 14조에서 사용자에게 법령의 주 내용을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규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협 의원님 안 중에 또한 가지가 142페이지에 보면 내용 중에 반의사불벌죄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42페이지 맨 아래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서 그 벌칙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가는 것이 근로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43쪽, 서면근로계약 위반 시 제재 전환 관련해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는데 의원님 안이 거의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안은 형사처벌 수위를 두 배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것은 정부안과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석현 의원님 안 중에 4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미시정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저희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50쪽, 체불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정부안에 부가금을 부과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부가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안과 권성동 의원안이고, 그다음에 김경협 의원안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경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은 사실 오히려 이용강제금이 체불청산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정 체계상 노동위원

회가 개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156쪽,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체불사업주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도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6월 17일 날 법안 소위 시 정부안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정부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60쪽.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160쪽,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해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체납사업장(사업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도 정부안으로 의견이 지난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62쪽은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임금지급 방식 관련해서 논의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근로기준법을 한번 논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경협 의원안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은수미 의원님은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인영 의원님 안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권성동 간사님.

161쪽 보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논의하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이미 논의한 내용과 사실과 달라서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이것 논의하고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62쪽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논의할 때 임금명세서 관련해서는 노력의 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임금지급기일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김경협 의원님 안에 보면 ‘일정한 날짜’……

○이인영 위원 정리하고 지나갔다고?

○소위원장 권성동 보류하고 넘어갔어, 대체 토론 다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인영 위원 또 통치고 간 거 아니야?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야,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대체토론 했어.

정부는 반대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이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근기법 아까 논의하고 넘어갔었는데 근로시간 기록하는 것도 그리고 영세사업장 실제로 기록하기 어렵다고 실효성 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금명세서도 지금 사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들은 다 임금명세서 주지 않습니까? 받으시지요, 노동부도? 임금 받을 때 이게 어찌어찌해서 얼마나 이것, 안 받으세요? 받으시잖아요? 저는 더 답답한 것은 이미 임금대장을 기록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임금대장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것을 명세서로 주는 게 힘들다는 것은 사실 영세사업장은 임금대장 또한 법에는 되어 있지만 안 지켜지고 있다, 이 현실을 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영세사업장은 임금대장도

안 쓰니까 임금명세서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임금대장은 잘 쓰고 있는데 명세서만 안 교부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정지원 답변……

○장하나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한테 알려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현재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대장은 시행령에 따라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각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명시하라고 개인별로 이렇게 임금대장 양식에 따라서 비치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 부지런히 근로감독도 하고 지도 활동도 하고 기초 관계 질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한 55% 수준에 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작성에 대해서는 각각 벌칙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그 벌칙이 부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근로감독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맞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그런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대 기초관계 질서라고 해서 부지런히 합시다라는 영세한 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감독해 나가서 서면 근로계약서가 체결이 되면 임금대장도 체결이 되고, 임금대장이 되면 근로자한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본인의 임금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에서 임금명세서라는 부분을 다시 의무화를 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중의 장치를 뒀을 때 결과적으로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서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작성에 대한 준수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명세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현행 있는 그 두 가지 의무를 사업주한테 부과하는 게 좀 더, 한 사업장이라도 더 지켜지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그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회의할 때 한참 토론했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결국은 다시 논의를 해 봤자 재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제가 아까……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앞에 몇 페이지지요?

○은수미 위원 161쪽이요,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체불사업주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 고용부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답변해 보세요. 다 정리가 됐지요, 이 부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때 6월 달에 논의할 때 임금체불에 대한 그 필요한 정보만을 필요로 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서 임금체불 예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각종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게 체불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규모, 금액, 체납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요구를 체불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그 후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벌써 여러 건의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소위에서.

○은수미 위원 아니요, 그때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 취했는데요. 저는 체불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법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자료제출 요청이 딱 1호, 2호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1호, 2호로 구체화 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그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전체적으로 자료제공 요청은 분명하게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번에 마련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 목적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는 내재적으로 부과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사업장에 대한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입니다, 개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이 아니에요.

○은수미 위원 알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원식 위원 김경협 의원이 내놓은 임금지급 기한 10일 이내에 주게 한 것,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거든요. 건설업 경우에는 이렇게 유보임금이 아주 만연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통계를 보니까 34.7%가 다음 달 15일 이후로 이렇게 그냥 미루어 놓고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민생법이잖아요. 이런 것 빨리 해야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건설공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이 흔히 얘기하는 유보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실제로 일한 것보다 한 달 반 뒤에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10일 이후에, 그러면 전 달에 이제 일을……

○우원식 위원 10일 이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10일 이내에, 전 달에 1개월을 일했을 때는 보통은 임금지급기일은 하루를 정합니다. 정하는 날짜는 노사간에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통상 25일로 규정했을 때 25일 날, 10월 달에 일한 부분을 11월 25일에 받는 경우에 김경협 의원님 안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임금지급기일 자체가 11월 10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 25일까지의 부분은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보임금이라고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부분은 최소한 10월 달에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을 12월 11일 이렇게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그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는……

○**위원식 위원** 좋은데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일을 했는데 돈을 주기로 한 날인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주기로 한 날은 노사 당사자가 언제 정할지는……

○**위원식 위원** 그러니까 정하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위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로부터 열흘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하나 정하자는 거지, 건설업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냐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보면 임금 주기가 1일, 5일, 10일, 15일, 20일 다양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상으로도 매월 한 번은 반드시 임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했는데 한 달을 거르고 주는 게 아니라, 다만 25일을 해서, 기업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임금 주기가 다양한데, 김경협 의원님처럼 그렇게 안을 제안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은 다 10일 내로 당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도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유보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현재처럼 두고 저희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식 위원** 아니, 감독 열심히 해서 되나 말이지. 왜 임금에 이런 것을 안 해 줘요? 일하고, 마감 날 있잖아요, 마감하고서 돈을 줘야지요. 마감이라는 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10일 이내로 주게 해서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분신자 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건 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10일간 여유를 줘서 주자고 하는데 왜 그것을 우리 정부가 못 받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님은 혹시 그런 말씀…… 그러니까 10월 달 임금을 11월 25일에 주기로 했는데 11월 25일에 안 주고 뭐 12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위원식 위원** 아니, 임금 산정하는 마감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정했겠지.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을 며칠날 주기로 노사 합의로 해서 정해 주든지 취업규칙으로 정

하든지 정할 것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10일 넘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런데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게 1일 날 주는 경우,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사업장 여건에 맞게끔 하루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후에 15일 주기로 약정한 데, 25일 주기로 약정한 데는 전부 다 김경협 의원님 안을 법률로 받아들이면 그 사업장은 체불임금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들이 법적 강제로 인해서 전부 체불로 확정되는 부분인데, 당사자들이 약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날에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마는 그날에 있어서 주는 것까지 강제한다는 건 좀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식 위원** 다른 데는 좀 덜 해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하고서 두 달 이렇게 밀리는 게 아주 기본이예요, 기본. 그런 것 없애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건설업에 있어서는 최봉홍 의원님께서도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일 자체를 10일 이내로 다 당기는 부분은 사업장 전체에 있는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협으로 정해져 있는 게 좀 혼돈이 오거나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봉홍 위원** 부담은 되는데 10일 넘어가는 건 체불로 쳐도 괜찮아요. 보통 10일 안에 다 주거든. 주는데 기업 경영……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제 그 부분 그만 논의하고……

○**위원식 위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관행을 좀 개선해 볼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한 달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체불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합니다. 정기 지급일을 정해 놓는, 그 당사자가 정해 놓은 날짜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 집행을 해야 되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162쪽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임금명세서 교부는 그냥 노력 조항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 가능하느냐라고 저희한테 하문하신 내용도 있고요.

다만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서면근로계약서 그리고 임금대장을 지키는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나 각종 형태의 명세서가 지급되고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의 준수율이 아직 낮은 부분에서 삼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중의 장치를 좀 더 집행이나 준수율을 높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정부 입장을 건의드립니다.

○**장하나 위원** 과태료 없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이인영 위원** 과태료……

○**소위원장 권성동** 과태료는 안 되고.

○**이인영 위원** 아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하나 위원** 정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임금대장하고 근로계약서는 지금 현행대로 잘 하시고 준수율 높이시고 임금명세서는 과태료 없이 하세요. 어차피 이게 이 취지에 동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대체적으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는 노력 조항을 뒀을 때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 하라는 의무를 두고 사실상 노력 조항의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 보다 더 현행 있는 서면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의 준수율……

○**장하나 위원** 같은 말을 두 번 하실 필요 없이 그 의견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계속 같은 얘기해 봤자 이게 토론은 아닌 것 같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죄송합니다.

○**장하나 위원** 답답하네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훈시규정, 노력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임금명세서를……

○**은수미 위원** 교부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권성동**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규정 없이.

○**은수미 위원**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정리합니다.

170쪽.

○**우원식 위원** 왜 과태료를 안 매기는 거야.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다 논의했어.

○**전문위원 김양건** 170쪽의 제도개선·규제개혁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는 사용자·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보고 또는 출석의무 삭제 그다음에 사용자의 법령 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 폐지하는 내용,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귀향 여비 지급 의무 폐지 그다음에 기숙사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규제개혁 관련 사항인데요. 고용부하고 노동위원회에 모두 출석하는 그런 의무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노동위원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별척이 좀 다릅니다. 한쪽은 과태료고 한쪽은 벌금이고 해서 그것은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근기법에서는 노동위원회 출석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면……

○**은수미 위원** 저는 이거 반대했는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반대예요?

○**은수미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13조하고 노동위원회법…… 지금 근기법이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 의견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은수미 위원** 예, 그대로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 3항, 4항은 다 동의하시고 1항만

반대하시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개정 내용에 보면, 170쪽 보면 1항, 노동위원회에 보고·출석 의무 삭제하는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짧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173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법에서도 관계 위원 및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벌금에 오하려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관계 위원 및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고·출석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보고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고 노동위원회법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당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똑같네요, 내용이. 노동위원회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법이 훨씬 엄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복 규제가 되어 있어서 이건 노동위원회법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법조항이 하나는 조사권에 대한 거고 하나는 보고·출석 의무라서……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이것도 보고·출석 맞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 하나는 위원회의 조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 들어갈 때의 문제이고 이것은 보고·출석 의무라서 이것을 굳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노동위원회법 31조 1호에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거짓의 보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제목만 조사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의 3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관계자에게 출석·보고, 필요 서류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형사 처벌한다…… 똑같아요, 내용은. 한번 잘 보세요.

○김용남 위원 조사 기피도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 제재도 가능한 건데……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지금 법을 잘못 만들어 놓았어. 노동위원회법 만들 때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은수미 위원 아니요, 이건 어쨌든 제가 다시 검토하고 유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내용이 전부 동일하다니까?

○은수미 위원 유보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그때 이게 왜 쟁점이 됐었는지 내가 기억이……

○소위원장 권성동 그때도 똑같은 것으로 쟁점이 됐어요.

○은수미 위원 똑같은 쟁점이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쟁점이 되었으니까 그건 노동위원회법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자……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그 당시에 노동위원회법을 봤었다니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동일하다니까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수미 위원 아니, 저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 이거는 유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2, 3, 4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174쪽의 이것은 기타제도개선 사항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2조는 별문제 없어요. 16조(계약기간) 관련해서는 이게 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서 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된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고·출석과 관

런해서 말씀하시면서 2, 3, 4항은 이견 없다고……

○소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2, 3, 4항이 뭘 말씀하신 건지……

○김용남 위원 170페이지의 개정사항 중에 왼쪽.

○장하나 위원 아, 이것을 2, 3, 4항이라고 표현하셨구나. 저는 몇 조의 몇 항 이것을 계속 보느라……

그런데 이것을 전자 형태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2, 3, 4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근기법을……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장하나 위원 이체하지 마라?

○소위원장 권성동 예, 불필요한……

○은수미 위원 아니, 전자적으로 게시한 경우를 했다면 비체한 것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괜찮다고 보는데요.

아니, 의견을 얘기하세요.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벌써 논의가 됐던 모양이지요?

○은수미 위원 예,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됐습니까?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앞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쟁점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타결을 시도하고 또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 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10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8항까지 강기정 의원, 한명숙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심사자료 3권의 1쪽 보시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 의원님 건의 첫째,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교원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 이외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헌법하고 교육기본법에서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조법상 금지된 정치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정치활동, 예를 들어서 시국선언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다시, 뭐라고요? 정부안이 뭐였다고요?

○김용남 위원 현행 유지.

○은수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하나 하나 좀 묻겠습니다, 논쟁을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우선 1998년 6월 3일부터 1999년 8월 3일까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인정, 그러니까 실업자나 해고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당시 논의가 진행되었고요. 그때 2기 노사정위원회의 김원기 위원장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는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특히 1991년부터, 91년, 96년, 99년 할 것 없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2010년에 있

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계속 무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하고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거를 받들자면 현재와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몰라서 인권위가 권고한 것도 아니고 ILO가 한 것도 아니고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고 전 세계적인 권고도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환경적 요인이 고려되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고용부가 여전히 1998년 이전 혹은 1997년이나 96년도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수미 위원** 그동안의 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우리가 다 선진국으로 가는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현재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현재와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 그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까지 약 1년간 논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국제기구에서,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1996년 이후에 계속 권고를 했어요, 너희들 가입했으니 이것저것을 고쳐라.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위원회도 논의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고용부는 계속 소귀에 경 읽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귀에 경 읽기처럼 ‘우리는 반대한다’ 이럴 게 아니라 도대체 뭔가 변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노라든가 뭔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은 상황이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상황이면 다른 것도 하시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저도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야당에서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체토론으로 여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넣는 한명숙 의원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심상정 의원안은 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넣겠다 이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지금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아, 정치활동입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내가 착각했구나, 착각했네.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그다음……

자,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지금 사실은 사안마다 ILO 기준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대 당에서 할 얘기 많고, 외국 입법례 얘기하면 또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상과 관련된, 어쨌든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규율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현상…… 보면 각국 나라가 발전하면서 보통 선진 외국들이 60년대, 70년대 교사들이 이념편향성이 심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죽 세월이 지나면서 나아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상과 관련된 조항이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씩만 얘기하고 입장 정리하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상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여쭙 보고 싶었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도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여쭙 보고 싶었고, 법조인으로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요.

전교조하고 교원하고, 그러니까 전교조라는 단체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원들은 그 단체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구분될 수 있잖아요?

행위들이 제재받는 것도 각기 구분돼서 제재받



을 수 있고, 전교조가 제재받을 수 있지만 교직원들은 제재 안 받을 수도 있고 교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지만 전교조는 또 제재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완영 위원 정치활동을요?

○이인영 위원 예.

○최봉홍 위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완영 위원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전교조 조합원이든 일반교사든……

○이인영 위원 전교조하고 전교조에 소속된 개인하고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완영 위원 달라져야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달라져야 할 이유를.

○이인영 위원 아니 교원들,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공무원노조나 전교조가 아닌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못 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완영 위원 전교조 조합원도 교사로서 적용받지요, 기본적으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게 단체와 그 단체의 구성원을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단체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그럴 수 있고 어떤 때는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돼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전교조 법에서……

○김용남 위원 사안보다…… 다 일일이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까만 그냥 단정적으로, 폭넓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교원이 뭉친 단체에 대한 규제가 각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겠지요.

○이인영 위원 규제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안은 거꾸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금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는 그 부분들이 정치활동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 제약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컨대.

○김용남 위원 아니, 그거는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인영 위원 그래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봉홍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공무원법에 우선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에서 정치활동을 막아 놔다는 말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열 수는 없어도 최소한은 열어 줘야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최봉홍 위원 그거는 교섭권을 줘 놔잖아요. 줘 놔으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해 나가면 되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국회에 와서 어떤 자기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정치활동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최봉홍 위원 엄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이인영 위원 지난번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 공청회 할 때 여야 국회의원들, 대표까지 가 가지고 다 축사해 줬는데, 그러면 그거는 정치활동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완영 위원 그거는 정치활동이 아니예요. 그거까지 정치활동……

○이인영 위원 그게 왜 정치활동이 아니예요. 그거야말로 정치활동이지?

○이완영 위원 아니지.

○은수미 위원 그러면 경제활동입니까?

(웃음소리)

○이인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완영 위원 정치활동이라는 게 정당에 가입하고…… 로비하고 이런 거는 정치활동이 아니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로비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요.

○이인영 위원 아니,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오히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활동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지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완전히 다 트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사가 가지는 개인으로서 못 하는 것보다는…… 교조나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다 트자는 거는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들은 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이완영 위원 방금 예를 든 거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완영 위원 의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로비도 하고 이런 거는 금지하는 것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이완영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작위적이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맞아요. 정치운동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도 역으로 돼 있지요. 공무원법이나 정당법이나 선거법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되어 있고, 정치활동은 그거보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같은 정치운동은 법에 정해진 개념이고, 그렇다는 것이 고등법원 판례고요.

그다음에 정치활동은 정치운동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걸 금지하는 것이고, 전교조나 아니면 교총이나 이런 데서 교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입법을 해 달라, 저런 입법을 해 달라라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인영 위원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이 너무 경직적 조항이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걸어 버릴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해서 봐줄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정리를 해야지,

그런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당 쪽의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가 헌법에 규정돼 있고, 또 201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정리하고 가지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법률적인·법리적인 의견을 구해 보는 건데……

○이완영 위원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완영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좋은 질문을 우리가 서로 논의했다니까.

○이인영 위원 그걸 구분해서 접근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니까 얘기를 해 본 거지요.

○최봉홍 위원 다음 넘어가십시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다음은 3쪽에,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명숙 의원님은 교사 자격이 있는지 자로서 유치원 또는 초·중·고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4쪽에 보면 심상정 의원안은 유치원교사 자격증, 초·중·고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님은 또 대학교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부분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만약 뭔가 바꾸려면 또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왜 논의가 필요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완영 위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거는 노조의 형태하고도 관련

이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근무한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계속 하겠다, 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노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노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구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자격이 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 현행 노조 존립 형태하고는 안 맞지 않나,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수미 위원 그렇지만 교원노조도 아시겠지만 산별노조잖아요. 기업별 노조가 아니잖아요.

○우원식 위원 교원노조가 초기업별 노조라고,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고자가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판례거든요. 이걸 제한하는 게 대법원 판례를 어기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이거는 현재 결정이 있지 않았나요?

○우원식 위원 이걸 무슨 자격으로 해.

○이완영 위원 그 판례에 대해서,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정부에서.

모르나?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저희들은 일반 노조법에서, 초기업 단위의 노조의 범위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가 일반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 신분이거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이러한 입법 정신의 공감대 위에서 입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교원만을 교원노조법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조법이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데,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입 범위에 관련해서는 그때 핵심적인 이슈여 가지고 그때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 33조에도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자주적인 단결권이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초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거고, 그러면 판례를 따라야지. 정부가 만날 얘기하는 게 판례인데, 판례까지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법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지 왜 이걸 안 받아들여.

○최봉홍 위원 그 판례가 근로자들이면 몰라도 교육공무원 아니에요? 왜 공무원들에게 그 판례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우원식 위원 왜요? 초기업별 노조인데요.

○최봉홍 위원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봐도 교육공무원법을 능가해야 되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2013년 9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인데……

○최봉홍 위원 그 안에서 자격이니 뭐니 다 정해 줘야지.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야지.

○은수미 위원 그와 별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교원은 거기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뭐예요? 그 근거를 대 보세요. 사회적 공감대가 어디 있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사회적 공감대의 근거를 대 보라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노사정이 논의를 했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회적 공감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인권위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도대체 고용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뭐예요? 고용부가 주장한다면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뭐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라는 게 학교 현장에 관련된 문제여서, 예를 들면……

○은수미 위원 누가?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원들이요?

○은수미 위원 아니, 사회적 공감대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공감대의 근거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런 우려들을, 걱정을 많이……

○은수미 위원 누가, 누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대놓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노동부 입장은 알겠고, 여당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노조법이라는 것이 교원의 신분, 임

용 절차의 특수성, 교육의 자주성·공공성 등 이런 것에 비해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노동기본법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런 특별법의 제정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는 해고와 취업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원이든 공립학교 교원이든 간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원의 신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컨대 파면되면 몇 년 이내에는 재임용이 안 되고,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처벌받으면 10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서 전직 교원의 경우에 교원노조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 논의했으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됐어요. 아시지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

○우원식 위원 그래서 교원노조 결성 보장에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초기업단위 노조에 해당한다’ 이런 논의가 이미 있었다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논리이고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던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미 다 얘기한 것을 가지고, 법안이 나오면 통과시키기로 해 놓고 왜 안 해요? 정권이 다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전에도 그거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새누리당 다 갔으니까 이제 그만 끝냅시다.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다 가다니요? 두 사람 있잖아요.

○우원식 위원 과반도 더 갔는데, 정작 법을 통과시키자는 사람들은 다 가 버리로 야당만 앉아서 뭐 하러 법을……

○소위원장 권성동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금 논의를……

지금 상당수 있잖아요?

○은수미 위원 됐습니다.

정말 그만합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공무원 노조법 하자고……

○은수미 위원 만날 밤샘토론 하자면서 있지는 않고……

○우원식 위원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 얘기된 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완영 위원 근로시간 단축할 때 노사정 합의 구속받아야 되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원식 위원 이런 것부터 받아주면 또 생각해 볼게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받아주자고요.

○우원식 위원 그만해. 우리는 다 앉아 있고 두 명이나 가고……

○이완영 위원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은 검토해야지요.

6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7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7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 발의)

7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 발의)

(17시3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9항부터 73항까지 이상규, 강기정, 이상민, 전순옥, 한명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그래도 고용부가 좀 성실하게는 해야 되잖아요? 무슨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든가.

우리가 법안 검토해 달라고 구걸합니까? 저런 대답을 하니깐 그렇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국장이나 차관한테 주의를 주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발언할 때 신중하게 잘 하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대충 얘기하고 가려면 뭐 하러 와요?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대충 얘기하고 갔잖아요?

○은수미 위원 근거자료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몇 번이나 논의를 했어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도저히 고용부는 안 된다……

○이완영 위원 안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은수미 위원 무슨 ‘사회적 공감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안 된다면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우원식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내놔야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은수미 위원 사회적 공감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완영 위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공무원·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우원식 위원 이게 남북이 대치된 상황까지 나와요?

○이완영 위원 예.

○우원식 위원 지구가 온전해요. 지진 나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못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우원식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9쪽,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요……

○우원식 위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은수미 위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 논의는 왜 하십니까, 아무것도 될 것도 아니면서?

○이완영 위원 발의했으니까 해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만하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이완영 위원 거 봐, 또 “그런 소리”라니?

내가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만하시라니까요.

○은수미 위원 ‘그런 소리를 하신다’는 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 그게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못 한다면 그것은 7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비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논의 자체를 완전히 20년 이상으로 뒤로 돌리시는 발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우원식 위원 이거 오늘 안 되겠어요, 감정만 나빠지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지 마세요.

○전문위원 김양건 9쪽,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상규 의원님과 강기정 의원님 안인데, 이것도 공무원의 경우에 조합원의 정치활동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치운동 이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노동부는 반대 의견이고……

○이인영 위원 노동부, 얘기를 해 보세요.

○우원식 위원 노동부는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인영 위원 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야지요.

○우원식 위원 여당 의견만 반영하면 되니까요.

○은수미 위원 이완영 위원님 말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는 불가하다, 이런 게 고용부의 답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하나 위원**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정치활동하고 뭐가 다른 지,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뭐뭐라고 규정된 법령 용어가 아닌 듯해서요.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위원장님도 어떤 토론회는 괜찮다 이렇게 하셨지만 명확하지 않아서요.

정치운동하고 정치활동의 다른 예를 하나 들어 주신다든가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운동 개념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강기정 의원 안에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정치운동인데, 이 정치운동은 법령에 아주 상세하게 정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정치활동이 뭐가 다른지, 뭘 더 규제하려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례가 있었는데, 정치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활동하고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행위를 법령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정치활동은 정치운동 이외에 특정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이나 집단적으로 정치 의사 표명을 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행위를 정치활동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구체적인 판단,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래서 정치운동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그런 것을 하면 바로 벌칙조항으로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고요……

○**우원식 위원** 장관은 “총선 승리” 해도 안 잡아 가고……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정치활동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처벌조항도 없네요. 나는 처벌조항 있는 줄 알았네요.

○**장하나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의사를 하면 전교조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데,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없지만 이 법을 사실상 쥐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서 사실 징계하고 있잖아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근태에 관한 것이지.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완영 위원님, 노동부에 물으니까 노동부가 답변하게끔 기다리십시오.

○**장하나 위원** 그래서 아까 정책적인 입장을 내는 것도 정치활동인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나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다시 여쭙어 볼게요.

공무원법하고 공무원노조법하고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공무원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법은 공무원법인데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공무원의 노사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 노조법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 규정한 보호법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의 틀 속에서 보호받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공무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법인 공무원법으로 전부 다 규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풀어나간다 그럴 때도 순서대로 풀다고 할 때, 한꺼번에 왕창 풀 수 없으면 순서대로 풀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풀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요.

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부터 해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서 함부로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나중에 더 좋아지면 그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일정하게 그것을 제한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을 때 새로운 생명체로서 노조법에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다르다고 해야지요. 안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노조도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전부를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법하고 공무원노조법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법이 일반 노조법하고 차이를 가질 텐데, 상당부분 공무원법에서 규정되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으니까 차이를 갖게 만들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까지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이인영 위원 그렇게 구분할 때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정치활동의 제약보다 공무원노조법이 가지는 정치활동의 제약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적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활동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그 정치활동을 법적인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여쭙어 봤던 것인데,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그냥 정치운동하고 정당 가입, 선거운동 이런 부분들에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됐으니까 그것은 빼고 정당활동이나 아니면 정치운동 이런 영역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활동하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참여 이런 것들하고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저는 다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완전히 한꺼번에 다 풀지 못한다 그러면 정책부터 풀고 그다음에 정치 개입·참여 이런 것들을 풀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한꺼번에 풀어 마땅하나 정책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유의 것들, 이런 정도는 아주 최소한으로 풀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어요. 예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등등, 공무원들은 한 달에 얼마큼 일해야 되고 얼마큼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유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못 하게 하면. 그런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접근하면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최소한의 어떤 정치활동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 가지 않으면 조금 잘못하면……

아까 그것은 법에 안 걸리는 거라 그럴지 모르는데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어떤 어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실제로 로비도 있고, 또 공청회까지 열고 거기서 국회의원들 죽 축사시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박수쳐 주고, 예컨대 이런 부분들은 정치활동이나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 애매해진다 이거예요.

○이완영 위원 제가 이인영 위원님의 그 질문을 구체화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 ‘국정화 교과서에 전교조가 반대한다’ 이게 정치활동 금지로 해서 못 하는 겁니까?

정부에 물어봅니다.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한다’, 전교조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정치활동 위배냐? ‘그게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집단투쟁 하고 연가투쟁 하고, 후자 쪽으로 단체행동 하는 게 정치활동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거냐’, 그것을 저는 심도 있게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인영 위원님의 질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전교조는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정치활동 위반은 아니다.’

○이인영 위원 전교조는 할 수 있다?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공무원노조든 전교조든.

○이인영 위원 공무원노조든 전교조는 할 수 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반대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거리에…… 별도로 수단상 법 위반 문제는 별론이지. 그 말 자체를 했다고 지금 정치활동 위반으로 보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누구나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 자기 정치적 기본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하는 것은 판례나 이런 데서도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노조법상으로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이나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무슨 정책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그게 정치지…… 정부의 특

정정책, 다른 정책?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 예를 들면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다투어져서 사법부의 판단도 많이 받아 보고 그렇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방금 이완영 위원님의 질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렇게 입장을 낸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개인소신 이런 말 하실 것 없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그 얘기를 했으면……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국정교과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근로조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공무원의 근로조건 이외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공개적으로……

○**장하나 위원** 정치활동이다?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아니요, 사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야 될 저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석 권한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정치활동이다?

○**이완영 위원** 정치활동이라도 그것 위반해도 처벌 규정도 없어.

○**소위원장 권성동** 징계규정이 있지, 징계규정이.

자, 정치활동의 개념이 뭐냐고 여기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공무원노조한테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인영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만 논의해 주세요. 뭐가 정치활동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논쟁 벌일 필요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정치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금지할지 아닐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것은 각자가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요.

○**장하나 위원** 각자가 판단하면 안 되지요, 법률안인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요.

○**장하나 위원**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정치활동이냐 아니냐 궁금합니다.

○**이인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주제 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에 치중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나치게 많이 하고 계시지.

○**우원식 위원** 이러면 위원장이 사회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최근 이슈라서 질문드렸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것 정치활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 것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장하나 위원** 모르시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저한테 묻지 마시고……

○**장하나 위원** 노동부는 모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아니,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법으로 규율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교조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교육부 판단에 대해서 전교조가 불만이 있으면 또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해석이 되는 거지요.

○**장하나 위원** 아니, 노동부 소관 법안을 노동부가 판단 못 하면 어떡합니까? 행정적인 해석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아니, 공무원, 우리……

○**이완영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래? 행정해석은 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런가?

○**은수미 위원** 아니, 왜 판단을 안 해, 정치활동 금지라고 왜 있는데?

○**최봉홍 위원** 교원노조법에 교원노조가 행동할 수 있는 게 단체행동권은 없지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없습니다.



○**최봉홍 위원** 단결권만 있지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가 판단하고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

○**최봉홍 위원**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여기에서 의논을 한다면,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의논해 가지고 결정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 환노위에서 바꿀 수 있소?

○**소위원장 권성동** 자, 국장!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

○**소위원장 권성동** 정치활동의 의미와 개념이 뭔지 다음 회의 때까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정치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예.

○**소위원장 권성동**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도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은 허용이 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정치활동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갖고 다음에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11쪽에는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관련해서, 지금 일반직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보수, 교정 쪽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노동조합 가입 금지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한명숙 의원님 안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의견 간단하게 찬성·반대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으로 여야 한 분씩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수미 위원** 뭐라고요?

○**장하나 위원** 재검토.

○**이인영 위원** 앞에 설명 좀 달아 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소위원장 권성동**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붙이면, 첫 번째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과 군인 같은 다른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소방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공공성이 강하고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일반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5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은 하위직급에 지휘·명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용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업무총괄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정·수사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엄격한 지위체계에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가입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경우에도 노사 간 이해관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공공성 측면에서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의 경우에는 현행은 일반 노조법과 동일하게 중노위 판정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야당에서 먼저 의견 하실……

○**전문위원 김양건** 17쪽까지 같이 논의하는 것

있습니다, 노조 6급 이하, 5급 이하 범위 확대.

○소위원장 권성동 마찬가지로요? 정부는 반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개정하자는 주장이고……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이완영 위원 저는 11쪽에 우리 현재 판례가 있듯이 소방·군인·교정·수사…… 수사업무, 교정업무 이것은 특별한, 일반공무원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현재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으로 봐 줘야 되고요.

특히 인사·보수에 종사하는 자를 노조가입원으로 하자라고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용자 측에 부당노동행위 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노동조합법에 ‘인사·보수 업무, 기획·관리업무 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취지는 이런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노조에 가입 못 하게 해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면 와해를 시키거나 사용자 측 이익만 대변해서 노조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노조법에서도 반대 조항을 두고 있는 건데 이것을 노조원으로 가입하게 해달라는 것은 저는 노동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끝으로 공무원의 자격 유지는 일반근로자하고 똑같이 봐야 되지 이것을 따로, 계속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봐야 된다고 특별하게 예우를 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위원 이완영 위원이 차관 해야 되겠어, 논리가 조금 더 나아.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크린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야당도 의견을 좀 개선해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세요. 아까 하시라고 하니까 안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은수미 위원 예,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4년간 법안소위를 하는데 이번 마지막 법안소위에 정부의 태도가 가장 절벽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진전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

존의 내용보다도 못한 대답을 하세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런 절벽 같은 태도를 가지고 법안소위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법안소위를 오늘로 끝낼 것은 아니어서 재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도 너무 한다 싶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급 공무원, 서기관, 사무관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던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그 범위를 6급에서 5급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었고요. 국제기구들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논의가 좀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진전도 없이 계속 쟁점을 맴도는 절벽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는 정부가 발의한 입법은 통과시켜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정말 정부의 태도, 오늘 법안소위에……

○이완영 위원 5급까지 해야 된다는 게 어느 판례지요?

○은수미 위원 아니, 판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2004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법안소위에서 뭔가 통과시켜 달라? 혹은 통과시키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 정도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우원식 위원 그리고 이게 2006년 ILO 권고에도 ‘한국 정부가 5급까지 하는 것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권고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은수미 위원 얘기에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반대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해서 반대논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고개 끄떡하고 그냥 웃고 ‘아닙니다’ 뭐 이러고, 그게 무슨 정부의 태도예요, 그게? 그것 야당 위원…… 그것은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냥 여당이 의견이 같으니까 ‘여당이 비호해 주겠지’…… 공부도 안 하고 반대 논리도 제대로 정리해 오지도 않고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완영 위원 위원장께서 짧게 얘기하라고 해

서 그래요, 지식이 다 있어요.

○**우원식 위원**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그렇지, 무슨 논리를 얘기해야 될 것 아냐?

○**소위원장 권성동**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헌법 규정……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방관서에 가 보면 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본부는 모르겠지만 지방가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완영 위원** 참고로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부터 ‘관’자가 들어가요. 주사, 주사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는 실무자고 ‘관’은 관리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라는 용어를……

○**우원식 위원** 원래 이것 구분이 사용자의 이익을 항상 대표하는 자들을 빼는 거거든요.

○**이완영 위원** 예, 그럼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6급에서 5급이 됐다고 5급이 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늘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ILO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권위원회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법안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반대논리도 제대로 얘기 안 하면서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지 이게 뭘……

○**장하나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뉴스 다 보셨잖아요? 소방공무원들 안전 장비도 잘 지급도 안 되고 장갑도 자기가 사서 껴다 이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 저는 노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단체행동이라든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왜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하면 안 되냐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그 얘기도 들었지만 반대로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노조가 없어서 또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들이 실제로 박탈이 돼요. 그것을 ‘정부가 좋은 쪽으로 해 주면 된다’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의견들 본인들이 낼 수 있지 않으면 다른 노조가 있는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과의 차이는 이만큼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체행동, 아까 최봉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제약은 둘 수 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노조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그 부작용이 이미 크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 안 들으셨지요?

○**우원식 위원** 얘기 들었어요.

○**이완영 위원** 다 듣고 있어요.

○**장하나 위원** 그 점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해결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시지 않을까 보여줍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동네 소방서 가 보라고. 정말 근로조건이 제일 나쁜 데예요. 아주 호소를 한다고.

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노조를 못 만드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근로조건을 좀 좋게 만들어 줘야지요.

○**이완영 위원**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해야지요.

○**우원식 위원** 정부가 안 하니까 문제지.

○**소위원장 권성동** 노동부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인영 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리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의 논리적 근거가 특수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군인이나 경찰 이런 데하고 관련된 그런 논리라면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문제는 그 논리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다른 논리입니다.

○**이인영 위원** 관리직 이런 것과 문제들 그리고 그것은 서울에서는 어때도 지방에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중앙부처하고 지방부처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저도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유의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도 지금 안 되니까,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이고 그냥 막무가내 대답이고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감으로 해도 알 수 있는 얘기를 너무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막 얘기해 버리시면 그냥 우리가 여쭙 본 게 죄송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설명을 길게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관서의 경우에 과장을 맡고 있고요, 5급이. 중앙부처 같

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계, 인사계에 있을 때 계장을 5급이 맡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은 총무 것을 빼면 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니까 큰 과 같은 경우에는 5급이 계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이인영 위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들의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넓혀 간다, 정부가. 예전보다는 더 넓혀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이런 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순서 정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넓혀가실 것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한목에 확, 누가 시키면 한목에 왕창 넓혀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런 대답이라도 들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넓힌다고 그럴 때 어디서부터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판단이라도 하고 그런 도움이라도 돼야지 다음 토론할 때 진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모르겠다는 대답을 해 버리시면 우리가 너무 죄송하지요, 여쭙 본 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이 공무원 문제는 별도 법도 있고 하는 이유가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 주거든요.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박봉이긴 하지만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또 균형을 맞추어서 앞으로 고쳐 나갈 때도 같이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보장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 신분보장하고 교환을 한다?

○**은수미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안 해 주는,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되면 노조가 불필요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점점 더 황당하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수미 위원** 정말 대단합니다.

○**우원식 위원** 신분보장이 안 되면 노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신분보장이 돼서 노조를 허용 못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지금 일부 허용된 범위가 있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저는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어요. 이것은 또 새로운 얘기네요. 그러면 고용부는……

아까 이인영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당연히 우리 그동안 합의사항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조 가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니고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까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 교원노조법하고 공무원노조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부 개별 부처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우리도 그렇게 봐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전 정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당도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당론을 모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은 금지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 사안의 개정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논의 과정에서 보면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야당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굳이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법안심의에 참여해 주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법안심사 과정에 참여한 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포함한 입법조사관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뒤에 계신 보좌관들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켜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권성동	김용남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완영	이인영	이인제
장하나	최봉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원순환국장	신진수
기후대기정책관	최홍진
상하수도정책관	오증극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정책관	박광석

고용노동부

차관	고영선
기획조정실장	한창훈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기상청

청장	고윤화
기획조정관	이우진
예보국장	양진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성균